

9. 선전에 관해서는 신문, 기타 각종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직적 방법으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은 특무기관장이 계획을 입안하고 회의를 지도해야 한다.
10. 간도 유신회 및 자위단에 관해서는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연길 시 정주비처(政籌備處)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의해야 한다.
11. 예회에 관한 알선은 총영사 및 주비처장이 담당해야 한다.

### 간도 협의회 제2회 회의 의사록(5월 23일)

#### 1. 유신회에 관한 건

민족융화기관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인정되어 만주국 국무원에서 공포한 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만주국 측에서는 농상무회 등, 일본 측에서는 민회 등을 위주로 회를 만들도록 하고 다음 회의까지 협화회 규칙을 만들어 다시 협의하도록 한다.

#### 2. 자위단 조직에 관한 건

만주국 측 및 파견대 및 영사관 감독하에 소규모로 지방적, 일시적, 비정치적인 자위단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에 관한 규정은 영사관 측에서 입안하고 5월 30일 월요일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다.

민생단의 자위단 계획은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

비고)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 단체는 여하튼 민족주의적이고 반관(反官)적이 되기 쉬어 자위단 같은 것을 만들면 관헌이 지휘 감독할 필요가 있으니 소규모의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만주국이 성립된 이상 만주국 측을 주동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공안대, 보위단 등의 완성으로 자치 유지를 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과도적 조치로서 자위단 등을 만들 경우 지방적이고 소규모인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유신회 같은 것은 민족융화기관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자위단을 만들어야 한다. 자위단에는 다소 폐해가 수반되나 가능한 한 폐해가 적게 하도록 하여 만들 시기라고 인정

된다. 민족융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주국 측에서 협의회 조직계획이 만들어졌으므로 그 규정을 참조하고, 자위단은 만주국 측의 주도로 만들고 비용 지출 면에서 보아도 만주인이 조선인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힘들 것이다. 아무리 감독 규정을 잘 만들어도 결국 반(反)관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무기는 자위단에게 공여하지 말아야 한다.

자위단은 지방의 일시적인 것으로 하여 정치에는 관여시키지 않아야 한다. 비적 공산당에게 대응한다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신회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하고 또 장차 만주국 측의 경비에 충실을 기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위단에 무기를 갖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비적이 습격해 올 경우에 일시적으로 무기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으로 소지하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다음 회의에서 연구해 보기로 한다.

〈출전 : 間島協議會二關スル件, 1932년 5월 20일,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9, 고려서림, 2001년, 547~554쪽〉

## 5) 연길현 자위단 조직에 관한 협의회 개최

1932년 7월 22일자 재간도 오카다(岡田) 총영사 발신 우치다(内田) 대신 앞 보고 요지

### 연길현(延吉縣) 자위단 조직에 관한 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7월 16일 국자가(局子街)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개최 및 폐회, 일시  
개회 7월 16일 오전 11시 20분

폐회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 2. 회의 장소

국자가 상무회의실

## 3. 참가자

### 〈일본 측〉

간도파견헌병장 헌병소좌 국자가 분관 경찰서장 쓰시마 하쿠노(對馬百之)

두도구 분관 경찰서장 하세가와(長谷川) 경부 죠노(城野) 경부

팔도구(八道溝) 분서장 아카이케(赤池) 경부

경찰부 히로오카(廣岡) 경부보

동불사(銅佛寺) 분서장 다미노(民野) 경부보

노두구(老頭溝) 분서장 기타즈미(北住) 경부보

의란구(依蘭溝) 분서장 대리 사토(佐藤) 부장

걸만동(傑滿洞) 분서장 대리 노자키(野崎) 순사

### 〈조선인 측〉

용정촌 조선인 민회장 이강재(李康在)

국자가 조선인 민회장 최윤주(崔允周)

노두구 조선인 민회장 문봉조(文鳳朝)

동불사 조선인 민회장 박순(朴淳)

팔도구 조선인 민회장 이영근(李永根)

의란구 조선인 민회장 김세익(金世益)

걸만동 조선인 민회장 김창률(金昌律)

### 〈만주국 측〉

연길현 경비 보좌관 포병대위 구와바라 고이치로(桑原荒一郎)

연길경비사령부 고문 후비(後備) 헌병대위 우에노 데쓰노스케(植野鉄之助)

연길현장 고입원(高立垣)

연길현 공안국장 장가빈(張嘉彬)

연길현 상무(商務) 회장 은명덕(殷明德)

동(同) 상무 부회장 국영상(鞠永祥)

연길현 공안국 제2분국장(동불사) 장지원(張志遠)

동	제3분국장(옹성납자(甕城嚳子)) 조옥주(趙玉周)
동	제4분국장 대리(두도구) 곡덕림(谷德林)
동	제5분국장(동성용(東盛湧)) 허전신(許殿臣)
동	제1분국 제1분주(分駐) 소장(의란구) 전전(傳銓)
동	제1분국 제1분주 소장(회막동) 방경전(方景田)
동	제2분국 제1분주 소장(팔도구) 정제원(井濟源)
동	제2분국 제2분주 소장(노두구) 왕덕량(王德亮)
동	제2분국 제4분주 소장(조양천) 왕선배(王善培)

#### 4. 회의 순서

- 1) 장(張) 연길현 공안국장 개회사(별지 첨부)
- 2) 고(高) 연길현장의 훈시(별지 첨부)
- 3) 구와바라(桑原)의 연길현 경비보좌관 인사(별지 첨부)
- 4) 자위단 부칙의 심의
- 5) 제의(提議)
- 6) 폐회

#### 5. 회의 상황

구와바라(桑原) 경비보좌관의 인사에 이어 장 연길현 공안국장이 의장석에 앉았다. 현재 이 지방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앞 간도 협의회에서 제정된 자위단 규칙에 기초하여 각 부락에 자위단을 조직하는 것이 급무임을 말하고 연길현 내에 있는 자위단 부칙의 토의에 들어갔다.

- (1) 본 부칙은 연길현 내에서 조직하는 자위단에 대해 적용할 것.
- (2) 자위단원의 복장은 군경으로 착각할 수 있는 복장을 금하고 모두 남색의 외투를 입고 출근할 경우는 각반을 두를 것. 이의 제조비는 자위단을 조직하는 구역 내 재주민에게 부담시킬 것. 외투 외에 제복을 만드는 것은 상관없으나 재주민의 빈부 정도, 지방의 경제 상황을 참작하여 가능한 한 주민의 부담 경감을 고려할 것.
- (3) 자위단 조직은 치안의 추이, 지방의 정세를 보아 모두 연변 4현 자위단 규칙에 기초하여 조직할 것.
- (4) 단원인 표시로서 흰 수건에 '모처자위단'이라고 붉은 글씨로 소속공안국 또는 동분국의 관인을 찍은 완장을 팔에 두를 것.

- (5) 단원은 각자 경적을 소지하여 적의 습격, 기타 이상을 발견할 시 연속적으로 경적소리를 내어 단원 및 부락민에게 급히 알리고 다음을 위배한 자는 징계할 것.
- 급보를 받고 출장하지 않은 자
  - 단장 부단장의 지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
  - 고의로 출장에 늦은 자
  - 규칙 위배의 행위가 있는 자
- 징계는 주의, 훈계, 제명처분으로 할 것.
- (6) 비적의 습격, 기타 긴급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공안국 또는 일본경찰서에 급보하고 구원을 청할 것.
- (7) 단장은 자택 내지 기타 적당한 장소에 단무(團務) 처리를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8) 조직이 갖추어진 자위단에 대해서는 현공서에서 지명(地名)을 표기한 목제인감을 하부하고 자위단 임의로 인장을 새기지 못하게 할 것.
- (9) 자위단 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고인(雇人) 1명에 한해 고용해도 무방하다.
- (10) 단원에 대한 무기는 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 기타 지방의 치안 상태상 단원의 무기 휴대가 필요한지의 여부
  - 단원은 무기를 대여해도 무방할 정도로 훈련이 되었는지의 여부
  - 단원은 모두 성질이 양호한지
  - 대여한 무기의 보존방법
  - 근무의 수행이 확실한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조사한 뒤 서면으로 현장에게 전달하고 이에 기초하여 영사관 경찰서장 또는 분서장은 경비보좌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뒤 현장의 허가를 얻어 대여할 것.
- 현재 연길현 공서에는 자위단에 대여할 소충이 없으므로 앞의 심사를 거쳐 대여해도 좋다고 인정받은 자위단에 대해서는 재주민으로부터 인양하여 보관 중인 엽총을 대여할 것.
- 본 건에 대해서는 팔도구, 황직(黃直), 걸만동(傑滿洞)의 각 자위단에서 무기 대여에 대한 희망이 있어도 먼저 규칙에 따라 정식 수속을 거친 뒤 앞의 엽총을 대여하도록 할 것.
- (11) 단원에게 대여한 무기 총탄의 보존, 훼손, 분실 등에 관해서는 단장이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
- (12) 단원의 인원수는 그 부락의 상태, 치안 상황, 교통, 재주민의 다과 등으로 정하고

- 보통 단장 이하 20명 내지 40명으로 조직할 것.  
 (13) 단원의 훈련은 단장이 책임을 질 것.

〈출전 : 延吉縣自衛團組織ニ關シ協議會開催ニ關スル件, 1932년 7월 22일,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9, 고려서림, 2001년, 670~679쪽〉

## 6) 공비귀순취급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의 건

1933년 1월 27일자 재간도 나가이(永井) 총영사 발신 재만 무토(武藤) 대사 앞 전보 보고 요지

### 공비귀순취급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의 건

본 건에 관해 이 지방의 군의 치안유지 방책을 기초로 하여 공비의 귀순 취급에 관해 모든 관계자들이 회동 협의한 결과 별지대로 정하였다.

### 공비귀순취급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간훈(間擘) 지방 공비 소멸요령(1932년 11월 15일 조선군사령부) 제3조에 기초하여 화룡(和龍), 연길(延吉), 왕청(汪淸) 세 현에서 공비 귀순에 관한 사정을 정하기로 한다.

제2조 귀순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간단히 위원회라 한다)를 만든다.

제3조 본 규정에서 귀순이라 칭함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일만 관헌(일본경찰기관 만주국 공안당국을 말함)에 자수하여 앞으로 선량하게 살겠다고 서약한 자를 말한다.

## 제2장 편성 및 권한

제4조 위원회는 이를 국자가 파견대 본부에 두고 다음의 사람들로 조직한다.

위원장 파견대장

위원 파견대 참모

동 부관

파견대 헌병장

경비보좌관

총영사관 경찰부장

국자가 경찰서장

관할 경찰(분)서장

우에노(植野) 만주국 고문

만주 국헌(시) 공안당국(만주인 공비의 경우에 한함)

위원 부(附) 하사관, 경찰관 약간 명

전 항의 헌병장 및 연길현 경비보좌관, 국자가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의 총재에 의한 합의제로 하고 상임위원의 신청에 의한 귀순 허용을 심사 결정한다.

전 항의 심사 결정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위원, 부 하사관, 경찰관은 위원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 제3장 업무요령

제6조 공비의 자수를 받은 관헌 내지 위원은 자수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의견을 붙여 위원장에게 상신하기로 한다.

제7조 공비로 귀순을 신청하는 자는 귀순신청서에 명함 크기의 본인 사진 5매(본인 관할 경찰, 총영사, 본적지 경찰, 헌병) 및 증빙을 붙여 제3조 기재의 관헌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는 그 결의에 따른다.

(1) 귀순을 인정할 자가 있으면 위원장의 이름으로 귀순자의 사진을 첨부한 귀순인허증을 신청 관헌을 통해 내린다.

(2) 귀순이 인정되지 않은 자는 위원장의 이름으로 인허하기 힘든 내용을 기재

한 문서를 붙여 모든 서류와 함께 관할 일만 관헌에게 신병을 이송하기로 한다.

제9조 전 조에 의해 귀순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간도 3현 지방에서 새로운 사범이 없고 신고서 기재 이외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는 한 형사 소추를 연기하기로 한다.

#### 제4장 민회(만주국 구향사진(區鄉社鎭)을 포함하여 이하 같다)의 의무

제10조 조선인 민회는 위원회의 통첩에 의해 귀순자 명부를 작성하여 항상 감독 선도에 힘쓰고 동시에 일상의 기저 상태를 가장 가까운 헌병경찰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장 귀순자의 의무

제11조 귀순자는 성실하게 자신의 가업, 직업에 전념하고 관헌 민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귀순자는 일만 관헌 민회의 심문에 대해서는 성의를 피력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 귀순자는 귀순인허증을 소중히 보관하고 그 기재사항을 매일 일독하고 외출 시엔 반드시 휴대한다. 만약 헌병관헌 민회 간부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귀순자는 매월 2회 소관경찰(분)서에 출두하여 자기 행동의 개요를 보고한다. 만약 가장 가까운 헌병대가 설치되면 헌병대에도 들러야 한다. 단 전 항의 회수는 소관(분)서장이 가감할 수 있다.

제15조 귀순자는 미귀순공비의 소재를 알고 싶으면 가능한 한 관헌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관헌의 귀순 권고의 유세 내지 출동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협력해야 한다.

#### 제6장 잡칙

제16조 귀순자를 관할하는 경찰(분)서 및 민회는 당분간 매달 말일 조사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귀순자 행위에 대한 평가보고 3부를 제출한다.

제17조 귀순자로 귀순 이후의 행위에 대해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은 위원장 또는 총영사가 표창한다.



전 항의 해당자가 있으면 민회는 소관경찰(분)서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공비귀순취급 시행세칙

- 제1조 규정 제3조의 관헌 귀순의 신고를 수리할 때는 보충 조서를 작성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상임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 상임위원회는 전 조의 신고를 받을 때 가벼운 것은 자신이 인허하고 정상이 중한 것은 의견을 붙여 위원장에게 상신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 규정 제7조의 신고서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해 거주지의 구(區), 향(鄕), 사(社), 진(鎭) 및 민회의 장 등 세 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하도록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의 생략을 허할 수 있다.
- 제4조 규정 제8조의 귀순인허증의 양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 제5조 위원장은 별지 제3의 양식에 의해 귀순인허자 명부를 작성하여 예하 각 부대장 헌병장, 경찰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 귀순인허증 교부의 관헌은 그 인허증 교부 시 신체검사를 행하여 별지 제4양식 대장에 내용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출전 : 共匪歸順取扱規程及同施行細則制定ノ件, 1933년 1월 27일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0, 고려서림, 2001년, 123~132쪽〉

## 7) 조선인 민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 공로조서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발해, 그 세가 지방으로 파급되어 지방 치안이 문란해지고 공비나 비적이 도처에서 발호하여 살인, 방화, 약탈을 서슴지 않으므로 조선 농민들이 오지에 안주하지 못하고 전전공공하며 수확물을 버리고 겨우 몸만 도망하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이들은<sup>5)</sup> 일본 영사관 및 조선총독부 파견원과 협력하여 직접 피난 조선인들을 구제하

는 임무를 맡아 1932년 춘경기가 가까워지면서 피난 조선인을 위해 농경지 및 농자금의 차입을 알선하고 모두 원주지 또는 신이주지로 귀농시켰으나, 당시 비적의 출몰이 끊이지 않아 오지가 불안했다. 그리하여 다시 철도 연선으로 난을 피한 조선 농민들에게는 식량을 제공하고 노동이 가능한 자에게는 일을 주어 자활을 돕는 등 적극 구호에 힘써 1933년 춘경기에는 피난민들을 귀농시킬 수 있었다.

1932년 3월 만주국이 건설되자 솔선하여 관내 조선인에 대해 건국정신을 선전하는 데 힘쓰고 조선인도 역시 만주국인과 협력하여 오족협화의 뜻을 이루어 신국가의 융성에 기여하도록 고조하고 만주국인과 융화 협조하는 데 힘쓰는 등 조선인의 지도 부역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일만(日滿)군경의 경비가 완전히 정비되지 못한 오지에서는 일만 당국의 감독하에 자위단 또는 장정단(壯丁團)을 조직하여 비적에 대비하고, 지방 치안의 유지를 꾀하였다. 또 일만 군경의 비적 토벌 시에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안내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 토비 공작의 진척을 용이하게 하였다.

요컨대 이들은 사지에서 넘어오는 피난 조선인을 구제하고 안정시켜, 만주국에 대한 조선인의 불안 동요를 일소하고 이를 선도하여, 신국가 건설의 이상에 협조 매진시키고, 나아가 지방 치안 유지에 기여하는 등 신국가 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노력한 공로가 현저하다.

〈출전 : 朝鮮人民會長副會長及理事功勞調書, 1931년, 1932년, 『滿洲國建國功勞章 1934~1936』, 169~170쪽, 국가기록원 소장〉

---

5) 조선인 민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

### 3. 만주 보민회

#### 1) 비밀의견서(1920년 1월)

이번 조선 소요에 따른 동양의 대세 유지에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의견으로 제출하는 바이다.

- 다음 -

- 1) 남북 만주에 보민회(保民會)를 조직할 것.
- 2) 보민회원 전원이 제우교(濟愚敎)를 신앙으로 삼도록 할 것.
- 3) 보민회에서 만주보민주식회사(滿洲保民株式會社)를 경영할 것.

##### 1. 보민회의 취지

- 1) 보민회는 만주에 있는 조선인 독립운동과 그 밖의 불평분자들을 전부 귀화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 불평분자들을 본 회에 가입시킬 방법은 이번 상하이에 있는 이른바 조선임시정부의 내막을 내부 첩자를 이용해 알아내는 수단을 사용해 유도할 것.
  - 2) 보민회의 수령은 옛 일진회 잔당으로 지금 제우교(시천교) 신자들 중 자격 있는 자를 고르고, 그 조직방법은 대략 전 일진회의 규정을 답습할 것.
  - 3) 보민회의 설립경비는 전부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한다.
  - 4) 본 회의 행동은 완전히 관동 장관 또는 관동군 사령관의 지휘와 명령에 복종할 것.
- ##### 2. 모든 보민회원이 제우교를 믿도록 하는 취지
- 1) 제우교 제1교주의 예언에 따라 제우교로 동양의 대세를 유지하고 또는 장래 동양 종교가 될 것을 희망함.
  - 2) 제우교는 곧 동학으로, 조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이다. 따라서 인심을 선화(善化)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한 종교이다. 보민회는 모두 이 종교를 믿게 하여 그 가르침으로 도덕함양을 하는 한편 심성을 순치하여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할 것.

### 3. 보민회의 만주 보민회 주식회사의 경영 취지

- 1) 만주에 있는 불평분자와 그 밖의 이주민 전부를 보민회로 조직해 제우교의 도덕으로 이를 무마 귀화시키는 동시에, 본 회에서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무산자는 취직을 시키고 무학인 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한 여러 사업의 장려와 구제방도에 힘을 기울여 그들이 기꺼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

이상

1920년 1월

제우교 대표자 이인수(李寅秀)  
최정규(崔鼎圭)  
서태석(徐邵楮)

〈출전 : 秘密意見書, 1920년 1월,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1,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2) 만주보민주식회사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사는 만주보민주식회라 칭함.

제2조 본 회사는 다음 업무 경영을 목적으로 함.

1. 농업수리사업 및 토지경영
2. 건축물의 축조, 매매 및 대차(貸借)
3. 일반물산(物産)의 무역
4.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통

제3조 본 회사의 자본금은 금 500만 원으로 함.

제4조 본 회사는 본점을 봉천(奉天)에, 지점 또는 출장소는 기타 요소에 설치함.

- 제5조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만 15개년으로 함.  
 단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6조 본 회사의 공고는 신문지로 이를 행함.  
 단 공고할 신문지는 취체역회<sup>6)</sup>에서 정함.

## 제2장 주식

- 제7조 본 회사의 주식은 십만 주로 정하고 1주의 금액을 50원으로 함.
- 제8조 본 회사의 주권은 기명식으로 하고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의 5종으로 함.
- 제9조 본 회사의 주금 1회 불입금액은 자본금 사분지일(1주에 대하여 금 12원 50전)로 하고 제2회 이후의 불입기일, 방법 및 금액은 사업의 필요에 따라 취체역회에서 정하고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함.
- 제10조 주주가 주금불입을 태만히 할 시는 그 기일의 다음날부터 현주 불입일까지 체납금액 100원에 대하여 1보 5전의 이율을 징수하고 또 비용, 기타 손해가 있을 시는 이를 부담케 함.
- 제11조 본 회사의 주식을 매매, 양여하고자 하는 때는 본 회사의 소정서식에 의하여 당사자 연서(連署)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주권(株券)을 첨부하여 본 회사에 제출해야 함.  
 본 회사는 전 항의 청구가 있을 시는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주권 이면(裏面)에 사장이 기명날인한 후 그 주권을 양수인(讓受人)에게 교부함.  
 상속, 유증 또는 재판소의 집행 등에 의하여 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는 취득자만 주권 이면에 기명날인하고 정식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전 2항의 경우에는 주권 매 1매에 금 10전의 실비를 징수함.
- 제12조 주권을 분실 또는 멸실했을 시는 그 주권의 번호, 종류, 금액 및 이유를 상기하여 그 취지를 본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권(新株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전 항의 청구를 받은 때는 본 회사는 청구자의 비용으로써 그 취지를 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본 회사에서 만족하는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 신주권을 교부함.  
 전 항의 기간 내에 청구자가 이 주권을 발견한 때는 즉시 본 회사에 제출해야

---

6) 지금의 이사회를 뜻함.

함. 본 회사는 전 항의 예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고함.

분실 또는 멸실의 제출이 있던 주권에 대하여 고장의 신고를 하는 자가 있는 때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함이 아니면 신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함.

주권을 오염 또는 훼손한 시는 그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함.

주권의 분실, 멸실 또는 오염, 훼손, 기타 종류변경을 위하여 신주권을 교부하는 때는 신주권 매 1매에 금 40전의 수수료를 징수함.

제13조 본 회사는 매 결산기의 말일부터 정시 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주식의 명의서환을 정지할 수도 있음.

단, 이 경우에는 이미 그 취지를 공고함.

제14조 주주는 인감 및 주소를 본 회사에 제출해야 함. 그 변경이 있는 때도 역시 같음.

### 제3장 역원(役員)

제15조 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2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취체역(取締役) 7명 이상, 1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감사역(監査役) 6명 이상을 선정함.

제16조 취체역의 임기는 2개년으로 하고 감사역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함.

단, 만기 재선할 수 있음.

전 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 최종의 배당기에 해당하는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음.

제17조 취체역 또는 감사역에 결원을 생길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행함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로 함.

단, 법정의 수를 결(缺)하지 아니하고 이 사무에 지장이 없는 때는 그 보궐선거는 차기 정시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도 있음.

제18조 취체역은 취체역회를 조직하고 호선(互選)으로써 사장 1명, 전무(專務)취체역 1명 및 필요에 따라 상무(常務)취체역 1명을 호선할 수 있음.

취체역회는 본 회사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함.

제19조 취체역회에서 필요로 하는 때는 상담역 약간 명을 촉탁할 수 있음

제20조 취체역회를 개최할 시는 사장 또는 전무취체역이 이를 소집하고, 사장 또는 전무취체역이 이에 의장이 됨.

단, 취체역회의 의사는 출석 취체역의 다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가 될 때는 의

장이 이를 결정함.

제21조 사장은 본 회사를 대표하며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취체역회 및 주주총회의 의장이 됨.

사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전무취체역, 상무취체역 또는 다른 취체역에서 이를 대리할 수 있음.

제22조 전무취체역 또는 상무취체역은 사장을 보좌하고 본 회사의 일상 업무를 집행함.

제23조 감사역은 본 회사의 업무를 감사함.

제24조 취체역은 재임 중 자기 소유의 본 회사주식 200주를 감사역에게 공탁함을 요함. 전 항의 주식은 본인이 퇴직하더라도 임기에 속한 결산보고가 정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되찾을 수 없음.

#### 제4장 주주총회

제25조 정시주주총회는 매년 4월에 이를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취체역 회의 결의로써 사장 또는 전무취체역이 이를 소집함.

제26조 총회를 소집할 시는 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된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함.

제27조 주주는 대리인으로써 그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단, 그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함.

제28조 각 주주는 1주에 대하여 1개의 결의권을 가짐.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으로써 이를 정하고 가부동수 되는 때는 의장의 재결(裁決)에 의함.

제30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를 결의록에 기재하고 취체역 및 감사역이 기명 날인함.

#### 제5장 계산

제31조 본 회사는 매년 3월말에 제 감정(勘定)을 결산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 보고서, 손익계산서 및 이익 분배안을 작성하여 정시주주총회에 제출함.

제32조 이익금분배의 방법은 매기 총 이익금에서 총 손실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다음 비례에 의하여 분배함.

1. 법정적립금은 이익금의 백분의 십 이상으로 함.

2. 역원상여금은 순이익금의 백분의 십 이내로 함.

단, 역원상여금 중 이분의 일은 발기인 중 특별공로가 있는 자에 한함.

전 항의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주주배당금 및 후기이월금으로 함.

단, 형편에 의하여 별도 적립금, 기타의 항목을 설치할 수 있음.

제33조 이익배당금은 정시총회 종료 후 이를 지불함.

제34조 이익배당금은 매기 말일 현재 주주에게 배당함.

제35조 이익배당금 지불기일을 주주에게 통고한 후 3년간에 지불의 청구를 수령하지 아니할 시는 본 회사의 취득으로 함.

### 부칙

제36조 본 회사의 부담으로 귀속할 창립비용은 금 1만 5,000원 이내로 함.

1920년 1월 7일

〈출전 : 滿洲保民株式會社 定款 1920년 1월 7일,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1,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3) 만주보민주식회사 취지서

무릇 사람의 인생에서 사지백체(四肢百體)가 일신을 이루고 부모, 처자가 일가를 이루고 친척, 친구가 한 이웃을 이룰지라도 사람이 사는 데가 불미(不美)하고 의식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있는 사지백체도 장건할 수 없을 것이요, 우리 집을 이룬 부모, 처자도 화평화지 못할 것이요, 우리 이웃인 친척, 친구도 친목하지 못하나니, 이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일을 행할진대 먼저 거할 곳을 택하고 일정 소득이 있는 후에야 자신이 안락하며, 일가가 화목하며, 이웃이 즐거운 생이 길할 것이다. 무릇 쌀은 밥을 짓는 데 필요하나 알의 쌀로는 능히 밥을 지을 수 없을 것이요, 실은 옷을 짓는 물건이로되 한 줄의 실로는 옷을 지을 수 없음이다. 고로 중력(衆力)을 합하여 대사업을 경영함은 가히 고금에 명료할 바라. 영국의 문명을 보고자 하거든 그 원류를 지방 습관에 국한할지며, 미국의



부강을 원하거든 그 근본을 인민재산에서 연구할지니, 사람들이 힘을 합하지 아니하고 장원(長遠)한 사업을 어찌 기도하리오. 아! 어리석은 사람과 고집스러운 무리들은 구습에 빠지고 태어난 곳을 편안히 여겨 어리석게도 일생에 천교(遷喬)<sup>7)</sup>하기 어려우니, 시대의 진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라 할 것이라.

유래 동삼성(東三省)은 토지가 기름지나 흉년이 없고 기후가 적합하니 질병이 적고 천산(天產)이 부유하여 금은동철(金銀銅鐵)과 우모피혁(羽毛皮革)이 태산 같으니 재원이 풍부하여 세계에 하늘이 내린 제일의 곳이거늘, 단 거민이 희소하고 넓은 토지가 펼쳐 있어 장마와 가뭄에도 수확에 되(升)로 심으면 말(石)로 거두는 옥토연야(沃土衍野)를 한 번도 개척하지 않았으니, 애석하다! 이 토지여. 애석하다! 동포여. 심지(心志)를 용단(勇斷)하고 구습을 혁파하기 어려우면 우리의 활동산업과 유통기관을 포기할 뿐인 지라. 더구나 지금 흉년의 해를 당하여 생활문제가 전 조선에 들끓는 중 서선(西鮮) 일대에는 더욱 극심한지라. 월경한 지 20년이 된 이래로 동삼성에 유리(流離)한 동포가 백만의 수를 헤아리겠고,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이산(移產)할 동포가 장차 기천(千)만에 달할지 알 수 없으니, 아! 이 유리하는 동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하리오.

이로써 우리 동지(同志)가 발언에 중론(衆論)이 하나가 되어 동포와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할 목적으로 보민회를 조직하고 이 범위 내에 보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제방법과 구호방침을 순서대로 전개하여 전후에 유리되는 동포를 안도낙업하게 하기 위하여 창립규칙과 고금모집을 착착 진행하는 바라.

그런즉 동포가 동포를 위함은 혹자 왈 불가(不可)며, 혹자 왈 불공(不肯)하리오마는 이는 현재에 동포를 위하여 다소의 금전을 투자함과 같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그 순연한 이익은 수지여산을 고려하면 다대한 이익을 낳아 주주에게 배당함이 다른 회사에 비해 우월함은 물론이요, 동시에 개척계에 대사업이 될지니 결코 이 사업을 경시치 말지어다. 우리 조선 동포여!

1920년 2월 일

---

7) 새가 골짜기에서 높은 나무로 올라가 앓음. 여기에서는 태어난 곳을 떠나 새로운 터전으로 옮김을 뜻함.

## 만주보민주식회사 발기인

이인수(李寅秀), 김택현(金澤鉉), 김유영(金裕泳), 김영학(金永學), 양정묵(梁正默), 왕일성(王日成), 배정태(裴貞泰), 차성술(車成述), 편상영(片尙永), 허주(許柱), 최정규(崔鼎圭), 김종관(金鍾觀), 김기홍(金基洪), 최병기(崔柄基), 오헌영(吳憲泳), 조봉래(趙鳳來), 박우양(朴瑀陽), 송지통(宋志通), 곡지해(曲志海), 안홍익(安鴻翼), 백형린(白衡麟), 서태석(徐邵皙), 표성천(表聲天), 고수봉(高秀逢), 송세철(宋世喆), 이필주(李弼周), 이승호(李承灝), 이선민(李仙民), 김은성(金殷成), 전병수(全炳壽), 공재완(孔在琬), 공석환(孔錫煥), 이해수(李海秀), 황치운(黃致云), 김용수(金容洙)

### ○ 목론견서(目論見書)

금 125만 원	자본 총액 500만 원 사분일 불입액
내역	
금 1만 5,000원	창립비
금 45만 원	토지 15만 두락 매입대
금 8만 원	사두차(四頭車) 100대
금 5만 원	자경차(自耕車) 50대
금 5만 원	농마(農馬) 500두
금 7,185원	경종수확 운반용구류
금 3,500원	취반기구류
금 49만 4,315원	영업자금
금 10만 원	유통자금 준비금

## 수지예산

- 수입부

금 294만 8,000원

---

내역		
금 280만 원		타조(打租) 20만 석
금 14만 8,000원		15만 두락 소출고

- 지출부

금 98만 3,500원

---

내역		
금 12만 3,560원		사무소 경비 3개 소
금 10만 원		종조(種租) 7만 5,000두
금 50만 원		농부 5,000명 1개년 양미(糧米)
금 18만 원		취반경비 기타
금 2만 5,000원		마량(馬糧) 기타
금 3만 원		조세 및 각종 세금
금 2만 원		의약비
금 5,000원		농구수선비

차액 196만 4,500원

금 75만 원    농부 5,000명 1개년 보수

금 1만 5,000원    창립비 상각

재차액 이익금 119만 9,500원

---

내역		
금 10만 원		법정적립금
금 3만 원		결손보전준비금
금 2만 원		배당평균준비금
금 50만 원		역원상여금
금 37만 5,000원		주주배당 3할 이상
금 40만 4,500원		다음연도 사업비
금 4만 원		후기이월금

갑(甲)

貼 參  
用 錢  
消 印  
印 紙

### 주식납입서

주의 : 본 증 2통 및 인감 2통을 요함  
숫자는 일(壹), 이(貳), 삼(參), 십(拾) 등을 사용함

— 滿州保民株式会社 株  
此 株金總額 圓也  
此 証拠金 圓也

이 증거금은 제1회 불입금 중에서 충당할 것이오. 만일 제1회 불입을 아니할 때는 반려가 부득이 함.

다음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여 정관 및 좌기사항을 승낙하고 증거금을 첨부하여 이에 납입함

대정(大正) 년 월 일  
주소

만주보민주식회사발기인 귀 중

납입인

- 정관작성 연월일	1920년 1월 7일	
- 목적	(1) 농업수리사업 및 토지경영, 개척 (2) 건축물의 축조 매매 및 대차(貸借) (3) 일반물산의 무역, 수출입, 판매 (4)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통	
- 상호	만주보민주식회사	
- 자본총액	금 500만 원	
- 1주의 금액	금 50원	
- 일회 불입금액	1주에 대하여 금 12원 50전	
- 본, 지점의 소재지	본점은 봉천, 지점은 만선 간 필요소	
- 취체역의 가질 주식의 수	200주 이상	
- 회사의 공고방법	취체역회에서 정한 신문지로써 이를 행함	
- 존립기간	설립일로부터 만 50개년으로 함	
- 회사의 성립기간	1920년 6월 30일	
- 회사 부담에 귀속할 창립비	금 1만 5,000원 이내 불입 경성주식회사 한성은행 본점 및 각 지점 동 한일은행 본점 및 동상(同上)	
- 납입 및 불입금 취급소	강경 한일은행 지점 대구주식회사 대구은행 만주는 조선은행	
- 주식납입수가 모집수를 초과한 때는 발기인이 적절히 결정함		
- 발기인의 인수 주수 및 주소 이름		
3천 주	만주 봉천성 흥경현	김유영(金裕泳)
3천 주	동(同) 봉천	이인수(李寅秀)
3천 주	동 통화현	왕일성(王日成)
5천 주	길림성 합이빈	배정태(裴貞泰)
2천 주	봉천성 흥경현	안홍익(安鴻翼)
1천 주	동 환인현	김은성(金殷成)
1천 주	동 흥경현	백형린(白衡麟)
1천 주	동	이동선(李東璇)
3백 주	동	고수봉(高秀逢)
2천 주	경성부 경운동 80번지	김택현(金澤鉉)
3천 주	무안군 암봉면 도창리	서태석(徐邵皙)

2천 주	목포부 죽동	차성술(車成述)
2천 주	경성부 수포정 21번지	홍재기(洪在祺)
1천 주	목포부 양동 102번지	양정묵(梁正默)
1백 주	경성부 견지동 112	이철화(李徹和)
1백 주	충북 청주군 강외면 봉산리	김진용(金鎭容)
2백 주	동 강외면 다락리	전병수(全炳壽)
3천 주	중국 길림성 천리	허 주(許 柱)
1천 주	충북 청주군 강외면 연제리	최병기(崔柄基)
1천 주	무안군 지도면 광덕리	오헌영(吳憲泳)
1천 주	동 자은면 고장리	표성천(表聲天)
1백 주	영동군 황금면 마암리	김기홍(金基洪)
1천 주	김제군 고지면 조군리	김종관(金鍾觀)
1천 주	동 읍내	최정규(崔晶圭)
1천 주	통천군 통천면 태리	차남식(車南植)
1천 주	함평군 평릉면 구산리	편상영(片尚永)
5백 주	영덕군 영덕면 화개리	정병한(鄭炳韓)
5백 주	경성부 화천정	공석환(孔錫煥)
5백 주	나주군 동강면 월량리	한인수(韓仁守)
5백 주	동 남평면 교원리	황치운(黃致云)
2백 주	경성부 장교정 61번지	이해수(李海秀)
1백 주	경성부 중학동 12	정재설(鄭在高)
4백 주	전남 나주군 공산면 복룡리	박우양(朴瑀陽)
2천 주	경성부 수송동	조봉래(趙鳳來)

봉천(奉天) 소서변문(小西邊門) 외(外) 공원(公園) 앞 만주보민주식회사 창립사무소

경성부(京城府) 죽첨정(竹添町) 1정목(一丁目) 49번지 만주보민주식회사 주권모집사무소

전화번호            번  
대체구좌    경성            번

을(乙)

貼 參  
用 錢  
消 印  
印 紙

### 주식납입서

주의 : 본 증 2통 및 인감 2통을 요함  
숫자는 일(壹), 이(貳), 삼(參), 십(拾) 등을 사용함

— 滿州保民株式会社 株  
此 株金總額 圓也  
此 証拋金 圓也

이 증거금은 제1회 불입금 중에 충당할 것이오. 만일 제1회 불입을 아니할 때는  
반려가 부득이 함  
우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여 정관 및 좌기사항을 승낙하고 증거금을 첨부하여 이에  
납입함

대정(大正) 년 월 일  
주소

만주보민주식회사발기인 귀 중

납입인

– 정관작성 연월일	1920년 1월 7일	
– 목적	(1) 농업수리사업 및 토지경영, 개척 (2) 건축물의 축조 매매 및 대차(貸借) (3) 일반물산의 무역, 수출입, 판매 (4)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통	
– 상호	만주보민주식회사	
– 자본총액	금 500만 원	
– 1주의 금액	금 50원	
– 일회 불입금액	1주에 대하여 금 12원 50전	
– 본, 지점의 소재지	본점은 봉천, 지점은 만주와 조선 간 필요한 개소	
– 취체역의 가질 주식의 수	200주 이상	
– 회사의 공고방법	취체역회에서 정한 신문지로써 이를 행함	
– 존립기간	설립일로부터 만 50개년으로 함	
– 회사의 성립기간	1920년 6월 30일	
– 회사부담에 귀속할 창립비	금 1만 5,000원 이내 불입 경성주식회사 한성은행 본점 및 각 지점 동 한일은행 본점 및 동상(同上)	
– 납입 및 불입금 취급소	강경 한일은행 지점 대구주식회사 대구은행 만주는 조선은행	
– 주식납입수가 모집수에 초과한 때는 발기인이 적절히 결정함		
– 발기인의 인수 주수 및 주소 이름		
3천 주	만주 봉천성 흥경현	김유영(金裕泳)
3천 주	동(同) 봉천	이인수(李寅秀)
3천 주	동 통화현	왕일성(王日成)
5천 주	길림성 합이빈	배정태(裴貞泰)
2천 주	봉천성 흥경현	안홍익(安鴻翼)
1천 주	동 환인현	김은성(金殷成)
1천 주	동 흥경현	백형린(白衡麟)
1천 주	동	이동선(李東璇)
3백 주	동	고수봉(高秀逢)
2천 주	경성부 경운동 80번지	김택현(金澤鉉)
3천 주	무안군 암봉면 도창리	서태석(徐郃皙)



2천 주	목포부 죽동	차성술(車成述)
2천 주	경성부 수표정 21번지	홍재기(洪在祺)
1천 주	목포부 양동 102번지	양정묵(梁正默)
1백 주	경성부 견지동 112	이철화(李徹和)
1백 주	충북 청주군 강외면 봉산리	김진용(金鎭容)
2백 주	동 강외면 다락리	전병수(全炳壽)
3천 주	중국 길림성 천리	허 주(許 柱)
1천 주	충북 청주군 강외면 연제리	최병기(崔柄基)
1천 주	무안군 지도면 광덕리	오헌영(吳憲泳)
1천 주	동 자은면 고장리	표성천(表聲天)
1백 주	영동군 황금면 마암리	김기홍(金基洪)
1천 주	김제군 고지면 조군리	김종관(金鍾觀)
1천 주	동 읍내	최정규(崔晶圭)
1천 주	통천군 통천면 태리	차남식(車南植)
1천 주	함평군 평릉면 구산리	편상영(片尚永)
5백 주	영덕군 영덕면 화개리	정병한(鄭炳韓)
5백 주	경성부 화천정	공석환(孔錫煥)
5백 주	나주군 동강면 월량리	한인수(韓仁守)
5백 주	동 남평면 교원리	황치운(黃致云)
2백 주	경성부 장교정 61번지	이해수(李海秀)
1백 주	경성부 중학동 12	정재설(鄭在髙)
4백 주	전남 나주군 공산면 복룡리	박우양(朴瑀陽)
2천 주	경성부 수송동	조봉래(趙鳳來)

봉천(奉天) 소서변문(小西邊門) 외(外) 공원 앞 만주보민주식회사 창립사무소

경성부 죽첨정 1정목(一丁目) 49번지 만주보민주식회사 주권모집사무소

전화번호           번  
대체구좌   경성       번

〈출전 : 滿洲保民株式會社趣旨書, 1920년 2월,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4) 만주 보민회에 관한 건

공(公) 제235호

1920년 6월 16일

봉천 총영사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외무대신 자작 우치다 고사이(內田康哉) 전

##### 만주 보민회에 관한 건

지난 가을 이래로 서간도 지방의 불령선인의 침해에 대항할 목적으로 제우교도를 중심으로 한 보민회는 당초 최정규(崔鼎圭)가 총회장이 되어 주로 흥경현 신빈보(新賓堡)에 근거지를 둔 이래 최근 단결력이 높아지고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최정규는 다른 방면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출전 : 滿洲保民會ニ關スル件, 1920년 6월 16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1,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5) 보민회에 관한 건

공(公) 제251호

1920년 6월 29일

봉천 총영사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외무대신 자작 우치다 고사이(內田康哉) 전(殿)

##### 보민회에 관한 건

만주 보민회 총회장 이인수(李寅秀) 일행은(6월 16일자 서신 공 제235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6월 13일 봉천을 출발하여 17일 흥경현 신빈보(新賓堡)에 도착하여 회무의 확장 준비 중에 당일 흥경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단 철수를 명했다. 6월 23일 보민회의

간판을 공개적으로 내걸었다.

〈출전 : 保民會ニ關スル件, 1920년 6월 29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1,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6) 1921년 만주 보민회 본부 업무 필기(3월부터 7월까지)

이 글은 그간의 소식에 정통한 어느 간부의 수기이다.

3월 8일 본 회 총무 김은성(金殷盛) 및 조사원 이정근(李貞根), 엄주익(嚴柱翊), 정영복(鄭永福) 외 5명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본부 소재지의 주민 이의(李宜)를 불러내 구타하여 사망케 했다. 그 밖에도 이들 간부는 연일 무고한 동포 3명 내지 5, 6명을 납치해 이런저런 심문을 한 뒤 구타를 하였다.

4월 10일 통화현(通化縣)에 거주하는 오위기(吳爲基)가 장남을 데리고 흥경현 왕청문(旺淸門) 지방을 여행하던 중, 그 지방의 지부 조사원 박시화(朴時和)는 의심스런 혐의가 있다며 장남을 구타하여 사망케 했다. 이에 부친 오위기는 그를 총본부에 데리고 가서 그 지방에 주재하던 사토(佐藤) 순사부장과 함께 마구 구타했다. 그날 밤 총무 김은성은 이를 총살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저 약간의 독립단원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살해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어서 총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일 끌어내 고문하여 반사반생인 상태에서 점차 혐의도 풀리고 지방의 일부 지인들의 간청도 있고 해서 보증하에 15일이 지나 석방했다.

5월 10일 흥경 방면에 독립단원 70명의 침입을 확인했다며 평안북도 경찰부에서 아카시(明石)와 오가와(小川) 두 순사를 파견해 함께 이를 토벌하라는 명을 받은 보민회는 곧바로 토벌대를 조직하여 이를 셋으로 나누었다. 제1대는 사토, 아카시 두 순사와 김천을(金天乙) 이하 12명과 중국 순경 18명으로 구성해서 흥서(興西) 도령(徒嶺)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지방은 당시 농번기였기 때문에 삼삼오오 농경에 종사하는 동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오랜 세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선량한 자로, 독립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행 때문에 살해당했다. 제2대는 오가와 순사를 중심으로 보민회 간부 백형린(白衡隣), 이상현(李尙賢), 나주익(羅柱益) 이하 13명 및 중국 경찰 19명으로 구성해 흥남(興南) 홍묘자(紅廟子)로 향했다. 그 지방의 산속에서 약 20호에 달하는 동포들

이 거주하는 부락에 때때로 독립단원들이 잠입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의심할 만한 자들은 토벌대가 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원 환인(桓仁), 관전(寬甸) 방면으로 도주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은 거주자들이 모두 독립단 무리와 어떠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견해하에 그들을 마구 구타함으로써 반사반생의 상태에 빠진 자가 남녀노소 합쳐 70명에 달했다. 그 참상은 이루 말하기 어렵고 특히 한두 명의 독립단 관계자로 지목된 농부는 18일 납치를 당해 암살되었다. 제3대는 우두머리 최정규, 이정근, 이응도(李應道) 이하 11명과 중국 순경 17명으로 구성해서 흥경 왕청문 방면으로 출동했다. 그 지방에 거주하던 동포 80~90명을 혐의자로 보고 구타하여 이 중 사망에 이른 자도 있었는데, 특히 어느 한 부자 외 1명을 가장 유력한 혐의자로 간주하고 납치했다. 제2대가 있는 홍묘자에 집합해서 그날 저녁 최정규는 납치당한 3명의 뒤를 쫓아온 26~27살 되는 형수를 강간한 뒤 그녀의 간청으로 1명을 보내주었다. 나머지 부자 2명과 제2대가 체포한 2명은 오가와, 최정규의 합작하에 그 지역의 유록령(有鹿嶺)에서 각각 총살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수장인 중국인 모씨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살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것에 대해 최정규는 소양(小洋)<sup>8)</sup> 50원을 그에게 주고 무마했다. 하지만 이상 4명의 피살자들은 모두 그 지방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던 양민이며 이들을 독립단과 한패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최정규는 당시 봉천 총영사관이나 도 경찰부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총살했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 그 뒤 총무 김은성 일행은 홍묘자에서 그 지역을 여행 중이던 동포 3명 및 지방 거주자 중에서 그들 일당이 혐오하는 자 수명을 납치한 뒤 거기서 가까운 유록령 정상에서 이들 동포를 석방하고 표적 사격하면서 “도주하는 조선인을 표적 사격하는 것 또한 하나의 즐거움 아닌가”라며 크게 웃었다고 한다. 그중에 몇 명은 몸 여러 군데에 총알이 관통해 잠깐 기절한 자도 있고, 간신히 근처에 있는 중국 관현이나 민가로 도망하였다. 구조된 자들의 입을 통해 이 사실을 들은 지방 조선인들은 이는 인도적인 면에서 큰 문제라며 떠들어댔지만 그들도 후한을 두려워하였다. 적지 않은 금품을 뇌물로 주어 함구하도록 해서 겨우 무사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1921년 3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흥경 보민회 총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살해당한 자 10명, 반사반생 45명, 중상자 132명, 그 밖에 압암리에 실종된 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매일 그 횡포함이 심해서 지방 민심이 어지러운 가운데 보민회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인지 간부들 중에서 비교적

8) 중국에서 사용되는 작은 은화.

온건파라 할 수 있는 회장 이인수, 백형린, 이동성(李東成), 오헌영(吳憲泳), 최병기(崔炳基), 이상현(李尙賢) 등은 보민회 개혁을 시도하고 자세한 실상을 꽤지 30장에 기록해 한 통은 아카쓰카 봉천 총영사에게, 또 한 통은 그 지방에 파견된 사토 경부보에게 제출했다. 그 후 아카쓰카 총영사는 그 뜻을 당시 통화(通化)에 있는 영사관 분관에 근무하고 있던 조선총독부 통역관 스나가 시게루(須永 茂) 평민에게 전달했는데, 그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봉천 영사 및 조선총독부에 전하고 이것이 개혁 방안이라는 보고를 들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자들이 있어서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 온건파는 점차 외면당하고 최정규 일파는 더욱더 당국 관현의 신임을 받아 이를 믿고 횡포한 짓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

〈출전 : 大正十年(自三月至七月)滿洲保民會本部業務筆記, 『在滿鮮人問題と滿洲保民會』, 滿洲朝鮮人親愛義會本部, 23~25쪽, 일본 시가현립대학 소장〉

## 7) 만주 보민회 확장에 관한 청원

### [7-1]

1920년 11월 3일

우치다(內田) 외무대신 전(殿)

아카쓰카(赤塚) 총영사

16514 암 제408호

10월 20일자 기밀 제108호로 보낸 서신에 관해 일전에 군대를 따라 흥경 및 그 밖의 조선과 접경한 지역에 출장했다.

아이바 축탁 고이케(小池) 통역관은 이번에 특히 보민회를 확장하여 지부를 각지에 설치하고, 그 힘을 이용해 선량한 조선인들이 자위(自衛)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는 동시에 살인과 강도, 그 밖의 악행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불령선인을 단속하는 방침을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 위 두 사람이 흥경에서 보낸 소식에 따르면 그 지방의 보민회원은 우리 군대의 도착을 매우 기뻐하면서 이번 기회에 충분히 보민회

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세를 몰아 현재 각지에 설립했거나 설립해야 할 지부도 사정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서신에서 신청한 보민회 보조비 및 부대비용 지출을 조속히 검토하길 바라고, 또한 조사반도 파견하여 신속히 진행하고, 보민회와 함께 불령선인들을 단속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역시 신속히 소요 경비 지출을 검토하길 바란다.

조선총독에게 전보를 보내고 재중국 공사, 관동 도독(關東都督)에게도 전송하라.

〈출전 : 1920년 11월 3일,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1,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7-2]

### 재만주 조선인 보민회 확장에 관한 청원

현재 만주 및 시베리아에 재주하는 조선인은 그 수가 대략 200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유망민(流亡民)으로 일정한 재산이 없고 또한 그 지식정도가 매우 낮은 농업노동자로 힘들여 경작한 수확의 대부분은 중국인이 가져가서, 생활상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 움직이면 자포자기에 빠져 위협사상을 갖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그 지방에 있는 중국 관헌의 위력이 아주 약해졌고 최근에 더욱이 러시아 과격파의 영향을 받고 있어 거의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령선인은 거기를 근거로 활발하게 배일사상을 전해 일당을 모아 재주 동포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거나, 마적과 기맥을 같이하며 더욱 흉폭해져 마침내 무장을 하고 조선 내에 침입했던 것은 이미 세간에 널리 퍼진 것과 같다. 작년 훈춘 제국 영사 분관 습격과 같은 사건은 그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실행적인 것으로 많은 화기(禍機)를 안에 많이 품고 있는 상해임시정부와 같이 쓸데없는 공문을 일로 하는 무리들이 멀리까지 미쳐 있어, 만일 그 세력에게 맡겨져 구원책이 강구되면 200만 동포는 모두 불령자의 교묘하고 위력 있는 독립운동의 희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서로 죽여 멸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만주 일대에 있어서 제국의 이권도 역시 손해를 입기에 이르게 된다. 또한 만일 불행하게도 그들의 적화(赤化)를 보게 되면, 그 영향이 직접 중국 조선에 미쳐, 극동에 우려스런 난이

일어나게 된다. 최근 그들의 추이를 보면 친일의 정신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 중국인의 배일사상에 공명하여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럽 러시아의 적화에 구가하여 사회조직의 근거를 파괴하려고 한다. 위기는 나날이 더해져가고 있어 낮과 밤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찍이 한국병합 이래 동포가 속속들이 고향을 떠나 만주로 이주했다. 게다가 그 나쁜 길을 달릴 만한 소질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 그것을 방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 우리 동포 유지들에게 정으로 요구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급무라고 믿고, 지금부터 5년 전 동지와 서로 공모하여 사재를 털어 먼 만주로 향하여 극력 그들에게 설득하였다. 동양평화라는 큰 목표를 지닌 한국병합의 대의에 반대하는 것은 동족의 번영을 막는 길이고 그것은 서로를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작년 한국독립소우를 일으키고부터 불령자의 행동 위력이 더 흉포하고 험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들은 일신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몇 번이고 일신의 위험을 잊고 깊은 그들의 소굴로 들어가 귀순을 역설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선도하여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래도 물론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이 아직 미약하고 또한 소수 동지의 힘만을 가지고 전만 동포의 선도를 맡는 것은 파리가 장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말 할 수 있어, 그 공을 아직 끝내지 못하여 불령자의 위력이 아직 세서 다시 그것을 붕괴할 위험성에 있어, 이것에 관하여 동지와 더불어 상의해서 보민회를 조직했다. 재주 조선인으로 하여금 서로 보호한다는 방침으로 희비를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 외래의 위협을 피하여 현저한 성적을 올려 지금의 보민회는 재만 조선인의 유일하게 건실한 집단에 이르게 된 것은 실로 우리들이 고심참담(苦心慘憺)하여 그것을 경영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최근에 제국 당국 역시 우리들의 방책을 보고 약간의 국비를 원조해서 동회를 장려하기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하 당국의 대책을 보면 아직 그 경비가 근소해서 효력을 내는 것에는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민회의 출발에 깊게 인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재 관헌이 중심이 되어 그것을 행하여 그들 조선인은 당국이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회유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의혹의 구름이 한번 생기면 태산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진다. 따라서 그들의 의혹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동포 간의 양해에 기초해서 그 정에 호소하여 동포로 하여금 동포를 이끌어가고도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원래 보민회의 조직은 지금의 재만 조선인 대다수를 신도로 전통적으로 조선인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는 동학의 일파 제우교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한편에서 그것으로 보면 보민회라고 하는 것은 회원 상호 간에 신앙으로 일치되어 있어 외문자가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 교의인 유도선 3교가 섞여 한 파의 종의로 세워 스스로 동양보수의 정신을 가지고 초창기에는 정말로 서교에 대항하는 것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동양 민족의 혼연일치는 오히려 그 당연한 귀결이라고 선전하여 정치상, 윤리상은 물론 신앙을 가지고 회의 확장을 꾀하여 회원의 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양평화의 요지를 양해시켜 일한병합의 정신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더욱더 그 방침을 얻을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함에도 역시 처음부터 조선인 동포의 온정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들의 보민회를 조직해서 도처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동포 인심의 동요를 방지하여 그 존재가치 또한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해 항상 생각대로 되지 않아 아직 그 선전을 각 지방에 보급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같이 활동한 동지들의 결맹은 이미 되어 있어 손으로 발로 전 만주를 활동하면서 한바퀴를 돈 것과 같다. 지금 상황을 예를 들면 철로가 이미 놓여져 있는데 석탄이 소진되어 기차가 철로 위에 있어 바로 전 역에 도착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 여기에 약간의 국비 보조를 바랄 수 있다면 우리 보민회의 선전은 마치 우체국을 두어 편리해 지는 것과 같이, 몇 년 되지 않아 동회를 만주 각지에 조직해서 재만 조선인의 대부분에게 온건한 사상을 선전하여 동요를 막고 불명자로 하여금 공격할 여지를 주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서양의 적화를 추방하고 중국인 배일의 기풍을 온화하게 하는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앞드려 청원하건데 약간의 국비를 우리들의 기획에 지급하여 동포를 화란(禍亂)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국의 치평(治平)에 공헌하며 성화에 종복하여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경비의 대략을 부기하여 감히 윤희를 청원한다.

1921년 3월 8일

봉천수(奉天首) 흥경현(興京縣) 신빈보하(新賓堡河) 및 만주 보민회 총본부 총회장  
제우교 본부 대교령 대리부교령 이인수(李仁秀)

조선 경성 서린동 56번지 만주 보민회 총본부 고문  
제우교 성부인 배정자(裴貞子)

길림수(吉林首) 북간도(北間島) 용정촌(龍井村) 만주 보민회 총본부 부회장  
제우교 본부 북만주 총지부령 양정묵(梁正默)



봉천수 통화현(通化縣) 동문(東門) 내 만주 보민회 총본부 전총무  
제우교 선교사 오헌영(吳憲泳)

봉천수 홍경현 신빈보하 북만주 보민회 총본부 전총무  
제우교 선교사 최병기(崔炳基)

길림수 훈춘시 만주 보민회 북만주 총지부 회장  
제우교 선교사 이해수(李海秀)

길림수 회룡현(和龍縣) 두도구 지부  
제우교 신도사(信道師) 이선민(李仙民)

길림수 훈춘시 만주 보민회 북만주 총지부 총무  
제우교 선교사 윤범식(尹範植)

길림수 훈춘시 만주 보민회 북만주 총지부 총무  
제우교 선교사 이민관(李民觀)

봉천수 홍경현 신빈보하 북만주 보민회 총본부 전총무  
제우교 신도사 안홍익(安鴻翼)

조선 경성 사직동 139번지  
제우교 선교사 총본부 의제관장 변기택(邊基宅)

봉천수 통화현 동문 내 만주 보민회 지부 회장  
제우교 포덕사(布德師) 이동성(李東成)

길림수 회룡현 두도구 지부  
제우교 지부령 성흥경(成興慶)

조선 경성 효자동 50번지  
제우교 본무 서무관장 박종구(朴鐘九)

길림수 회룡현 장동(樟洞)  
제우교 총지부 지원사장(支源司長) 조연기(趙延起)

길림수 연길현(延吉縣) 소허문(小許門)  
제우교 지부령 강두원(姜斗遠)

외무대신 백작 우치다 고사이(内田康哉) 전(殿)

〈출전 : 在滿洲朝鮮人保民會擴張ニ關スル請願 1921년 3월 8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1,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8) 보민회 관계자의 건언서에 관한 건

고경(高警) 제2822호  
1922년 9월 5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외무대신 전(殿)  
내각 서기관장 전(殿)  
척식국 장관 전(殿)  
중국 공사 전(殿)  
봉천 총영사 전(殿)

### 보민회 관계자의 건언서에 관한 건

만주 보민회 고문 최정규(崔鼎圭) 및 제우교 교주 김유영(金裕永)은 현재 만주의 시국에 관해 제국 정부와 조선총독에게 건언(建言)해야 한다며 둘 다 장문의 초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출전 : 保民會關係者建言書ニ關スル件, 1922년 9월 5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2,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9) 훈춘 지방의 개괄적 관찰

1921년 3월 16일

조특보(朝特報) 제4호

훈춘 지방의 개괄적 관찰

(조선군 참모부)

### 훈춘현 지방의 개괄적 관찰

#### 마적의 도발 상황(훈춘 파견원 보고)

훈춘을 두 번째 습격한 마적 점동(占東) 일파는 작년 12월 하순에 화천현(樺川縣) 가목사(佳木斯)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받아 그 두목은 참수되었고 부하 200여 명(총 1,000여 명)은 살육되었다. 또한 훈춘현 동북 끝자락 부근 및 동녕현(東寧縣)의 접경지인 러시아 영토 내에서 횡포를 부린 마적 만순(萬順) 일파는 납치자의 몸값을 강요하려고 한 이래 벽지 지방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으나 장(張) 진수사(鎭守使)의 명으로 국자가(局子街)의 왕(王) 영장에 의해 토벌되었고, '니콜리스크' 부근에 있는 고산(靠山, 마적 두목)과 제휴하려 시도하다가 일이 틀어져 결국 러시아 영토 방면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점차 단결력이 흐트러진 동시에 우연히 그 절반은 일본군의 토벌대를 만나 마침내 사방으로 흩어졌다. 중국 측의 토벌도 이로써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현재 토벌대 후방의 경계를 맡고 있다. 오(吳) 대대장 및 부하 정(丁) 공병대대장의 부하 및 보위단은 이미 훈춘으로 돌아갔거나 원 주둔지로 귀환했다. 두목 만순도 전사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그 진위는 분명치 않다(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만순의 전사는 확실한 것 같다). 그렇지만 만순 일파의 마적과 점동 일파의 마적은 그 대부분이 도주했기 때문에 결코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서로 규합하거나 다른 단체에 가입할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마적에 관해서는 노흑산(老黑山) 부근에 지금도 여전히 마적의 소집단이 출몰하고 있다거나, 러시아 영토 연풍(煙風) 부근에는 마적과 과격파가 의기투합했다는 등의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강도적 약탈은 훈춘의 오지 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규모 습격이 있을 징후라고는 할 수 없다.

## 불령선인의 도발 정황

훈춘현 내의 유력한 불령선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최경천(崔慶天)과 최덕승(崔德勝) 무리뿐이다. 일전에 이들 세력 20여 명이 무장해서 훈춘현 육도구(六道溝) 부근에 잠복했다. 그들이 엄청나게 사격을 가해 많은 토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그래서 이소바야시(磯林) 간도 파견사령관이 중국 측과 교섭을 벌여서 중국 측이 1개 소대를 파견해 토벌하도록 했으나 2월 25일까지 아직 그 정황을 통보받지 못했고 총독부가 파견한 훈춘에 있는 데라오카(寺岡) 정부는 최경천 등에게 사람을 보내어 귀순을 권고하려 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 밖의 불온한 문서 등에 대해 주의하도록 했는데, 아직 이에 대한 첩보는 알지 못한다. 훈춘현 내는 일반적으로 평온한 상태이다. 국경지대 오지 방면에서는 러시아 영토 추풍(秋風), 삼분구(三岔口), 나자구(羅子溝) 부근에 과격파 및 마적과 제휴해서 큰 소요를 일으킬 계획이 있다거나, 혹은 러시아 영토 내 추풍에서 서일(徐一)을 총합부(總合部) 총장으로 한 대한국 총합부 조직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거나, 혹은 나자구 부근에는 불온한 단체가 수백 개의 무기를 휴대하고 금전과 식량을 정비하여 오참(五站) 방면으로 이동하려 한다고 하는데,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김좌진(金佐鎭), 홍범도(洪範圖) 등은 청산리 방면에서 돈화(敦化) 부근을 거쳐 나자구 밀산(密山) 부근을 통과해 '이만' 혹은 '알렉세예프스크' 방면으로 도주한 것이 확실하다. 특히 나자구 북방 신선동(神仙洞) 부근에는 불온단체의 무장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금품과 곡물 등을 징발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만'에서, 밀산 부근에서부터 나자구에 이르는 노선에는 그들이 획책한 어떠한 시설이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찰하는 중이다.

## 마적 및 불령선인 단속에 관한 중국 측 시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측은 훈춘현의 현 상태에 만족하면서 불령선인 단속에 관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최경천 일파에 대해서도 일전에 일본 측의 요구를 받고 토벌대를 파견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 마적에 대해서는 왕대대장이 지휘하는 약 250명을 주력 부대로 삼아 후방을 경계하도록 했고, 오대대장 이하 약 150명, 정대대장의 부하 약 80명, 보위단 약 80명으로 토벌

대를 조직해 허송세월을 보낸 지 2개월이 지나 겨우 러시아 영토 내에 압박을 가해 때마침 일본군이 그 잔당을 무장 해제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중국 측은 이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으로 보았고, 또 그러길 바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철저한 타격을 가해 그 화근을 근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왕대대장의 이번 토벌에 대해서는 일반 중국 민중이 칭찬을 하면서 그중에는 지금 당장 연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풍설도 나돌고 있다. 중국 군대와 경찰은 여전히 증원하지 않고 있다.

### 중국 관헌의 태도

중국 관헌의 태도는 여전히 겉으로는 친근함으로 표하고 안으로는 소원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토벌 때문에 입게 될 손해를 조사하고 주둔병 및 일본 경찰 분서의 설치에 관해 이것이 실행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주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베리아 ‘니콜리스크’ 지방에 있는 고산(마적두목)과 일본 주둔군은 모종의 양해를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과 중국의 친선이 긴요한 오늘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2월 20일 북경 외교부에서 범(范) 참사관이 훈춘에 왔는데, 그의 행동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아직 첩보를 받지 못했지만, 일본군의 토벌로 입은 손해 및 중국 측의 마적 토벌 정황을 주로 조사한 것은 확실하다. 그 지역의 중국관청에 도착해 보낸 공문 등에서 추측컨대 기강확립에 관해서는 상사의 지시가 다소 엄했기 때문에 관리의 태도도 점차 긴장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급관리, 특히 관병 및 순경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철저하지 못하다. 조선인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기존의 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배일적(排日的) 색채를 갖고 있는 감독자 밑에 있는 관병 등은 특히 현저하다. 반가요(潘家窩)에서의 조선인 사살 사건 및 온성(穩城) 건너편 강가의 모 군대에서 일본과 중국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 몽상을 하면서 불온한 말을 늘어놓는 중국병사가 있는 것처럼, 일본을 배척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정(丁) 공병대대장의 부하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 중국인 일반의 일본군에 대한 감상

중국인 가운데 관리 특히 호상(豪商) 등은 일반적으로 일본군의 주둔을 희망하고 있다. 관리가 일본군의 주둔을 싫어하는 것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관현의 뜻이다. 관리들의 속내는 마적의 습격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직무상의 존립을 고려해서 상사의 뜻에 따르는 것뿐이다.

하층민들은 일반적으로 일본군의 주둔을 반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생각건대 관병 및 순경 등의 허풍과 배일적 언동에 현혹되어 있고, 또한 불령선인 대한 걱정이 없고 마적의 습격을 걱정하는 일도 적다. 게다가 마적에 대해 도덕적 제재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위엄과 엄격한 군율에 내심 존경을 표하고 있다.

## 일본인의 감상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은 금융의 팽박과 물가 하락으로 신음하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철병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큰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어떤 이는 세 번째로 마적들의 습격이 있을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불령선인들이 마적 또는 과격파와 손을 잡고 습격할 것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귀순한 조선인은 여전히 총부리를 바꿨고 압박 폭행을 가할 것이라며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중국군이 늘어나 지난해 국자가 및 훈춘에서 일어난 중국 관병의 폭행 사건을 회상하면서 마적들의 습격에 대해서는 그들 관병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약탈을 자행하는 것은 아닌지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일전에 모 신문에서 일본은 간도 총영사관만 남기고 분관은 전부 없앤다는 취지를 게재한 것을 보고 벌써부터 일본 정부가 간도를 포기할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공황에 빠진 이도 있다. 이때 때마침 간도에서 조선인 사살 사건이 발생하고, 이와 동시에 간도 주둔군과 그 밖의 것에 관해 청원운동이 일어나 간도 내의 선민회로부터 훈춘에 지원을 요청하는 통보가 있었다. 이를 위해 민회는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조선인 이근양(李根陽, 전 온성군수)을 대표위원으로 해 25일 출발시켰다.

그렇지만 청원의 목적은, 현재로서는 주둔 희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이를 부차적인 것으로 하고 이 기회에 주둔을 대신할 다른 시설 및 이에 관련된 조선인의 이익을 획득하려는 것 같다.

또한 그 지역 거주민은 이 기회를 이용해 조선인의 접촉을 밀접하게 하고 일본인 거류민회, 보민회, 민공회(民公會)를 점차 합병시키려는 의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번 조선민연합회는 분명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암암리에 합병운동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는 자가 있고 그 대안으로서 동경으로 보낼 위원으로 보민회 회장 이해수(李海秀) 및 보민회 평의원 윤동철(尹東哲)을 추천하려는 자가 있다고 한다.

요컨대 일본인 일반의 상태는 공황에 빠져 있지만 재계의 부진은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당장 이 지역에서 철수하는 자는 일단 없을 것이다. 마적과 불온단체 등은 행동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목재업자는 예년에 비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금융의 팽박 및 일자리를 잃은 중국인과 조선인은 더욱 증가하고 점차 인심은 악화될 것이다.

### 조선인 일반의 상태

조선인의 상태도 대개 앞서 언급한 일본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조선인들의 참기 어려운 공포는 불명선인들의 두 배로 늘어난 불온한 행동 및 중국 군경의 압박이다. 귀순한 조선인 가운데에는 벌써 그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자도 있다. 또한 모 조선 지식인은 이번 철병을 두고 일시동인주의(一視同仁主義)가 아니라며 분개하는 태도로 모 연회석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이 만약 조선인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관헌에 기대어 보호를 받겠다고 말하는 자도 있다.

특히 일본관헌에서 일자리를 얻은 자(경찰관리) 및 원래 일본인의 수족인 자 등은 암살을 두려워하며 극도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으니 참으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민회의 정황은 그 뒤 큰 변화는 없으나 보민회의 간부(거주 제한자), 민공회의 간부 및 조선인 순사 등이 제휴해 친목회 같은 것을 조직했다. 그러나 마침 철병 및 중국관병의 반가요에서 조선인 사살 사건이 있어 간도 방면과 공명하며 조선민연합회를 개최하여 이 기회에 여러 단체를 합병하려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보민회는 주동하지 않음) 회장 이해수도 그 주요한 간부로 추천을 받고 굳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 속내가 있는 듯하다.

## 영사관의 시책

영사관의 시책으로서 별도로 특기할 만한 것은 없다. 여전히 경찰관의 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무적인 일로 바빠서 전체적인 상황에 주목할 여유가 없어 조선인에 대한 교화, 훈육작업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한다. 모 경찰 관리는 뻔뻔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근신치 못한 말을 내뱉었다. 즉 그 경찰관은 훈춘에서 근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일반민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다른 곳으로 전근하기를 희망하는데, 이로써 어찌 일반 소식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토벌대 철수 이후 귀순을 요청한 자는 10명 내외에 지나지 않고 이들 귀순자에 대해서도 사무에 쫓겨 신속하게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는 며칠간 체류하는 자도 있다.

일전에 불령선인 최경천 등이 잠복하고 있을 때 데라오카 경부는 직접 사람을 파견해 귀순을 권고했을 뿐 이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경찰력을 감안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절실히 경찰력의 확충을 바란다.

## 외국인의 행동

작년 12월 하순 미국 해군 무관이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에서 훈춘으로 와서 훈춘 및 '포세이트'를 시찰한 뒤, 1월 초순 중국의 미국공사관 소속 무관 '헤르나' 소좌가 훈춘을 방문했고, 1월 하순 '캐나다'의 장로파 선교사가 두 번 훈춘을 방문했다. 장래에 중국 관헌과 미국의 관계는 그다지 주시할 필요가 없다.

선교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층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장래에 관한 관찰

철군 이후 마적과 불령선인 및 귀순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이다. 마적은 일본군과 중국군의 토벌 이래 대체적으로 보건대 단결력이 파괴되어 훈춘 습격 때와 같은 큰 집단을 형성하여 훈춘에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과격파와 공명하고 이와 제휴하거나 동지를 규합해 다시 횡포를 부릴 것이다.



불령선인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군의 토벌로 계획이 좌절되었고, 그 근거지는 멀리 일본군과 중국군의 세력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력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고 은밀히 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먼저 종래와 같이 러시아의 선전과 맞물려 선전에 힘쓰고 인심을 악화시키고 협박하고, 이어서 독립을 표방하면서 연훈(延琿) 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또한 과격파가 이에 가담할 경우에는 그 행동도 맹렬해지고 그 시기 역시 빨라질 것이다. 또한 이를 감행하기 쉬운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는 시베리아에의 일본군의 여전한 주둔 여부, 또 훈춘에 증명해야 할 중국군 특히 간부의 소질에 크게 달려 있다. 따라서 일본이 시베리아에서 철병하고, 동시에 중국군이 전과 같다면 그 행동은 참으로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조만간 훈춘에 증가될 군대는 봉천군에 속하는 것이라 하니 어찌면 소질 측면에서 전에 비해 다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도저히 낙관할 수는 없다.

요컨대 일본군의 연훈 철병 후에는 곧바로 불령선인 등의 암살단이 횡행하게 되면서 먼저 귀순 조선인, 특히 조선인 관리 및 친일적 색채가 현저한 조선인에 대해 암살 행동이 속출하거나, 또는 강도단이 되어 나타나 횡포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철병 후 아무런 시설을 두지 않는다면 귀순 조선인은 중국 관헌에 붙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불온한 단체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 이 책의 수신처

참모차장, 육군차관, 조선총독부 어용계,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제19사단 참모장, 보병 제74연대장, 보병15 제2대대장, 보병76 제2대대장, 제20사단 참모장, 조선헌병대 사령관, 진해만 요새 사령관, 진해 요항부 참모장, 영흥만 요새 사령관, 청도 수비군 육군 참모장, 관동군 참모장,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참모장, 중국주둔군 사령관, 중국공사관 소속 무관, 남부 우수리(烏蘇里) 수비대장, 육군 운송부 부산 지부장, 조선육군 창고장, 조선군 부속 청함계(廳舍掛), 용산 병기지부장, 용산 위수병원장, 평양 위수병원장, 대구 위수병원장, 함흥 위수병원장, 나남 위수병원장, 회령 위수병원장, 북만주 파견대 사령관, 하얼빈 특무기관, 길림 독군(督軍)고문, 봉천 독군고문, 봉천 기시(貴志) 소장, 봉천 특파원, 니콜스크(尼市) 파견원, 간도 파견원, 간도 파견대 사령부

〈출전 : 琿春地方概括的觀察, 1921년 3월 16일,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3, 독립기념관 소장, 722~747쪽〉

## 10) 진정서(1921)

돌이켜 보건대 세계 대전란이 종결을 고하고 평화 극복에 이른 오늘날 각국 모두 생존경쟁이 극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민 사상 또한 크게 변화하여 그 영향이 우리 에게도 미쳐 동양 및 동양 5억 민중의 사상 또한 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혁명, 과격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운동, 내란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서 방심할 수 없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이들 개인의 사상을 일치시켜 평화의 길로 이끌고 신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인가. 고서에서 말하길 “천시(天時)는 지리(地理)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했다. 따라서 국가는 여러 시정(施政)을 통해 인민을 다스리고 선도의 길로 이끌고 있지만, 세계의 대세로 인해 민중의 사상이 변하고 있는 오늘날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시정으로만은 도저히 안도하지 못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평화로 이끌 것인가. 종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우리 동학에서는 유교와 불교로 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 내려오는 성훈(聖訓)과 같이 도(道) 및 물(物)이 있다. 도는 곧 영원해지면 쇠하고, 물(物)은 장구해지면 폐기된다는 것은 이상적인 이치다. 제우교 즉 동학은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1860년 4월 5일 최제우(崔濟愚) 씨가 처음으로 도를 깨달은 날에 시작되어, 그 뒤 동학을 널리 포교하여 지금은 교도 수가 70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가장 빨리 성장한 역사를 갖고 있다. 제우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제우 씨와 2대 교주 즉 최시형(崔時亨) 씨는 옛 한국의 이조시대에 비참한 형벌을 받았고, 그 뒤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 죽은 교도의 수가 약 40여 만 명에 달했는데, 교도가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동학의 도운(道運)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조 즉 최제우 씨가 남긴 시에 따르면, “물 위에 등불 밝으니 의심할 틈이 없으나, 기둥이 다 썩은 듯 보이지만 아직도 힘이 남아 있네(燈明水上無嫌隙, 柱似枯形力有餘)”라고 하고, 또한 “만년 묵은 가지 위에 꽃이 피어 천 떨기요, 사해의 구름 속에 달이 한 번 비치네(万年枝上花千朵, 四海雲中月一鑑)”라고 한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보듯이 제우교의 도를 유불선(儒佛仙)이 융합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 도는 마치 별 속의 달, 군성(群星)의 근원이다. 본인의 우견(愚見)에 따르면 동양천지를 유지하기 위해 메이지(明治) 천황폐하가 탄생하셔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고, 수많은 전쟁에서도 패전하지 않아 세계 각국이 제국의 병력과 군벌을 두려워하고, 각 열국 가운데 으뜸이며 동양 유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천황폐하께 명하신 것이다. 또한 교조 최제우 씨는 하늘이 알고 있는 성인으로, 동양에 강생(降生)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5억 민중은 천리(天理)를 따르지

않고 또 천명(天命)을 되돌아보지 않고 각자 그 마음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최제우에게 명하여 서학과 대비시켜 동학이라 부르게 하였고, 그 덕을 천하에 널리 전하여 민중을 구제할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100년도 되지 못한 오늘날에는 우리 교를 널리 매우 왕성하게 포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산하의 대운이 모두 이 도로 귀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도는 발생 후 90년 동안 태양광선과 같은 속도로 신속히 포교되었다”라고 하는 교조의 본의는 동양 대세를 우려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만리에 흰 눈이 어지럽게 휘날리고, 천산에 돌아가는 새의 날개짓이 끊어졌네(萬里白雪紛紛兮, 千山歸鳥飛飛絕)”라 하고, 또 “동산이 밝고 밝아 오르고자 하니, 서봉은 무슨 일로 길을 막고 막는고(東山欲登明明兮, 西峰何事遮遮路)”라 했다. 하지만 손병희(孫秉熙) 같은 자는 교조의 본의를 망각하고 조선 독립을 주창하면서 민심을 선동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결과, 막대한 자산을 잃었고 막중한 인명이 죽음으로 내몰린 자 수천만 명에 이르게 했으니, 국민의 의무로서는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종교의 의무로서는 그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이다. 교조의 탄식어린 말에 따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그 사람은 자포자기를 모르고 염치도 없이 난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는 도를 어지럽히는 나쁜 행위로서 도법을 단독으로 행하는 것은 또한 법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즉 난도난법(亂道亂法)을 행하는 자는 우리를 볼 면목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는 교조 손병희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서양의 예수와 대비시켜 최제우 씨의 이름을 따서 제우교라 하고, 구세주 대신 제세주(濟世主)라 하여 만주와 조선 각지에 교도 수가 수십만에 달한다. 일본과 조선의 차별 철폐, 즉 일시동인(一視同仁)을 바탕으로, 남북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서교도(西教徒) 및 동교도(東教徒)와 전 의병 및 망명한 자 등은 네 부류로 나뉜다. 서교도는 미국인에게 기대어 독립 곧 국가를 회복한다며, 미국인은 중국 실업가와 서로 손을 잡고 동북삼성에서 토지를 매입해 조선인 및 중국인 중 가난한 자들에게 3년간 무료로 이를 경작케 함으로써 인심을 얻고 예수교 교회당을 동북삼성에 건설하고 학교를 건립해 늘 배일 사상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 제우교도는 예전에 일진회 잔당으로 지금은 제우교도가 되어 일진회 시절에 서교도 및 의병 등이 소위 매국적이라 불렀지만 업무에 열심히 노력했다. 따라서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생산을 하고 있지만 교육 및 산업을 장려하며 어렵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처지이다. 주야로 탄식하고 있는 본인 등은 1919~1920년에 조선총독부 전 내무부 장관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의 권유를 받아 내각총리대신, 조선총독 및 조선군 사령관 우쓰노미야(宇都宮) 각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제우교가 주체가 되어 만주 보민회를 조직했으나 도저히 뜻처럼 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범위

내에서 보민주식회사를 설립해 동삼성의 광대한 토지를 매입해 무산계급에게 경작하도록 하는 뜻으로 주식 10만 주를 만들어 열심히 설립에 노력하였다. 만주와 조선 각지에서 금전 사정이 어려운 결과 우리 교도 외에 4만 주는 조금씩 지불할 수 있었지만, 제우교도에 대한 6만 주는 전혀 지불하지 못했다. 나올 수 있는 증거금(證據金)으로서 1인당 1회 지불금 12엔 50전 가운데 2엔 50전은 지불하도록 했으나 그 나머지 즉 6만 주에 대한 1회 10엔, 합계 60만 엔을 15년 동안 나누어 대차(借貸)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대차에 대해서는 만주 각지의 제우교도 가운데 신용이 있는 자 50명이 연대 채무자가 되어 앞서 언급한 회사를 설립하여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산업 및 실업을 만들게 하고 교육을 활발하게 하여 문명 진보를 이루게 하고, 종교의 지배로 황인종과 백인종의 구별을 알고 불평을 하는 민중으로 하여금 하나같이 평화로 귀의하게 하여 중국에서의 일대 모범이 된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친선에 있어서도 일종의 소개자로서 하일이 명하신 천황폐하의 홍은대덕(洪恩大德)과 최제우 씨가 천하에 포덕(布德)하여 민중을 널리 구제하는 본의와 목적을 달성하여 동양 대세를 유지하기 위해 보민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참고서를 첨부하여 여기에 봉원한다.

각하께서는 이에 관해 상세히 고안한 뒤 신속히 검토하시기를 바란다.

1921년 4월 9일

중국 봉천성 흥경현 신빈보 하북  
제우교 대교령 김유영(金裕泳)

조선 경성부 효자동 89번지  
제우교 부교령, 만주 보민회 총회장 이인수(李寅秀)

조선 경성부 서린동 56번지  
제우교 성부인 배정자(裴貞子)

조선 경성부 효자동 50번지  
제우교 신도사, 만주 보민회 부회장 양정묵(梁正默)

조선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면 초리  
제우교 선교사 박종구(朴鐘九)

조선 경성부 효자동 50번지  
제우교 선교사, 중국 훈춘 보민회 총지부 회장 이해수(李海秀)

중국 봉천성 홍경현 신빈보 하북  
제우교 선교사, 보민회 전 총무 최병기(崔柄基)

중국 봉천성 홍경현 신빈보 하북  
오헌영(吳憲泳)

중국 봉천성 홍경현 신빈보 하북  
제우교 전도사, 보민회 간부 안홍익(安鴻翼)

중국 간도 훈춘 서문의외  
제우교 선교사, 보민회 총무 윤범식(尹範植)

중국 간도 훈춘 서문의외  
제우교 선교사, 보민회 간사 이민관(李民觀)

중국 북간도 화룡현 두도구  
제우교 두도구 지부령 성희근(成熙勤)

조선 경성부 예지동 121번지  
제우교 전교사 김만경(金萬經)

조선 경성부 효자동 50번지  
제우교 본부 종화관원 김현택(金玄澤)

조선 경성부 효자동 50번지  
제우교 전교사 이태효(李泰孝)

조선 경성부 창성동 115번지  
제우교 본부 무관원 김관익(金關益)

중국 봉천성 통화현 남문의외  
제우교 훈도사, 보민회 지부 회장 이동성(李東成)

조선 경성부 내자동 31번지  
제우교 의제관장 변기택(邊基宅)

조선 경성부 적선동 55번지  
제우교 전교사 오필영(吳必泳)

중국 화룡현 두도구  
제우교 신도사 이선민(李仙民)

중국 연길현 소문허  
제우교 포교사 강두원(姜斗遠)

중국 북간도 화룡현 장량  
제우교 지원사장 조정기(趙廷起)

외무대신 각하

〈출전 : 陳情書, 1921년 4월 9일,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1,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11) 진정서(1923)

사람이 항심(恒心)이 없으면 향산(恒産)도 없고, 향산항심(恒産恒心)이 없으면 금수(禽獸)와 다를 바 없는지라. 고로 만주 일대에 항심향산이 없는 우리 동포를 교육으로 지도 하며, 헌법으로 보호하여 일선융화(日鮮融和)를 소개하고자 제우교를 포덕(布德)하고 보민회를 조직할 때에 당국의 애민하시어 협력 찬성(贊成)하시어 다수의 보조금까지 기부 하셨다. 이에 본 교회 간부는 열심히 진행하여 위로는 당국의 인화(仁和)를 받들고 아래로는 동포의 불평자를 귀순(歸順)케 하여 각각 그 생업을 편안하게 하고, 각자 즐거움을 얻어 거의 당국의 성스러운 뜻과 본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 회 두령 최정규가 말로는 국가공익(國家公益)이라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욕으로 가득 차 잔

인악행이 아닌 것이 없어 죄가 없는 자에게는 재산을 탐하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색(色)을 탐하여 민간에 악평을 발생케 하고 당국의 보조금과 부하의 수당금을 임의로 충족하여 교회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지라. 또한 귀순자를 다수 죽여 불평배(不平輩)의 반동 소란으로 우리 회원 300여 명이 피살당하게 하였사오니, 가련한 자 재만 조선인인요, 애통한 자 교회올시다. 무릇 이 글을 보시는 당국이나 이 말을 들으시는 각 사회이목에 스스로 발생하는 별례의 독이 없지 않을 터이나 최정규의 악행이 더욱 심하여 본 교회의 해산은 초미(焦眉)에 있고 불평배의 동화책(同和策)이 그치지 않는 금일에 알게 모르게 내두(來頭)만 희망하던 마음에 더 용서할 바 없어 최정규의 불법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진하오니, 자세히 조사하신 후 최정규를 개차(改差)<sup>9)</sup>하시고 본 교회를 유지하와 불평한 조선인의 동화를 얻어 당국의 은택을 누리도록 간절히 엮드려 바랍니다.

1923년 7월

현 주소 봉천 서탑 용목동 진정서 대표자	안홍익(安鴻翼)
동(同)	동(同) 이능만(李能滿)
동	동 엄주익(嚴柱翊)
동	동 김은성(金殷成)

외무대신 각하

### 최정규의 불법행위

1. 1920년 2월분 독립단(獨立團) 토벌차 환인현(桓仁縣) 영영구(英營溝) 출장 시에 사칭 독립단 관계자라 하고 허사길(許士吉)에게 소양(小洋) 350원(元)을 강탈한 일이 있는데 당시 출장원 엄주익(嚴柱翊)이 목격하였고, 이외에도 강탈금이 과다하다는 설은 목격인이 부재하기로 기재하지 아니함.
2. 1920년 3월분 환인현 간구자(干溝子) 제우교인에게 소양 250원을 사칭 대용(貸用)하더니 지금은 환인현 보민회를 설립한 공로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함.

9) 관원을 바꿈을 뜻함.

3. 1920년도 흥경보민회비 금 소양 700원을 범용(犯用)함.
4. 1920년 10월분 서간도군대 출동 시 흥경현 왕청문에서 독립단 수령(首領)으로 이미 순화한 자 5명을 동시 천장절(天長節) 축하에 참석하라 하고 최정규가 부하를 이들에게 파견하여 유인해 오다가 중간 동창대 순경국에 체포하였다가 3일 만에 군대 생존 5명을 참살케 함.
5. 1920년 5월분 최정규가 부하를 인솔하고 흥경현 왕청문 삼도구에 출장하였을 때 독립단 혐의자로 최봉희(崔鳳熙) 부자와 기타 1명(성명 미상) 합 3인을 체포하고 홍묘자 흥남 지회소에서 유숙하였다. 그때 성명 미상자의 형수가 쫓아 온 것을 최정규가 발견하고 색욕(色慾)이 발생하여 그 여자를 강간한 후 여자가 사정(私情)을 표하여 확실한 불령자(성명 미상자)를 풀어주고 연류자 최봉희 부자를 일시에 포살(炮殺)하였으며, 그 여자가 돌아갈 때에 호녀혜(胡女鞋) 한 켤레와 여비금 2원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곳 인심이 보민회 보기를 원수같이 하며 이와 같은 악행이 비일비재하여 보민회원 및 제우교인 300여 명이 암살되었음.
6. 1921년 6월분 흥경현 임시조사원 정봉록(鄭鳳錄)의 출장비 소양 10원에서 5원을 가로챈.
7. 1921년 11월분 보민회 환인 지부 회장 안홍익(安鴻翼)의 부임여비로 소양 80원을 시미즈(清水) 경부에게 청구하였는데, 최정규가 소양 20원은 엄주익에게 교부하고 소양 30원은 자기가 탈취하고 소양 25원을 부임여비로 안홍익에게 지급하였으니, 명색이 이 회 두령자로서 사소한 금액에도 이와 같이 사용함.
8. 1922년 1월분 각 현 시찰단 출장 시 수행인 이능만의 찬조금 160엔을 최정규가 이능만의 도장을 새로 파주고 그 금액에서 나머지 100엔을 가로챈.
9. 1922년 5월분 총영사관으로부터 관전현 보민회 경비금 350엔을 이 지부 회장 엄주익에게 지급할 때에 금 100엔을 가로챈.
10. 1922년 5월분 집안현 보민회 경비금 400엔을 총영사관으로부터 이 지부 회장 차강(車綱)에게 지급할 때 금 100엔을 탈취함.
11. 1922년 5월분 집안현 보민회 조사원 최일룡(崔日龍)의 비상금 60엔을 가로챈.
12. 1922년 9월분 보민회 지부 회장 회의 시 총영사관으로부터 교제비 명칭으로 금 500엔을 영수한 바, 이의 용도는 회의에 대한 제반의 교제 또는 이 회의 시 본부역원 위료에 대한 연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총영사관에서 지출한 것이다. 제반 교제는 고사하고, 역원의 연회도 폐지하고 그 대신 현금 얼마씩 분배한 바, 본부회장에게 50엔, 간사와 서기에게 40엔(2인분), 조사원 30엔(3인분), 합계 120엔만 지급하고 부



- 회장에 대하여 1전의 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액 380엔은 전부 최정규의 사리(私利)로 착복하였으니 재만 조선인의 보호기관인 사회 수석자(首席者)의 행동으로 온당하다 하기 어려움.
13. 1922년 10월분 보민회 본부를 봉천 가무정에서 전정정으로 이전할 때, 총영사관에서 사무실 이전비로 금 50엔을 수령하여 운반비로 근근이 소양 3원 30전을 소모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에 공용하지 아니하고 가로챘.
  14. 1922년 10월분 천장절 축하일을 맞아 본부 역원 일반에 대하여 술값으로 총영사관으로부터 금 30엔을 영수하여 역원 1인에게 소양 2원씩(5인분), 합계 10원만 지출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자기가 독식함.
  15. 1923년 2월분 최정규가 말하길 보민회 기본금 2만 5,000엔으로 보민회에 종사하던 사람이 거처도 없고 살 길도 어려운 자를 유지하도록 주선하려 해도 양(楊) 부영사의 반대로 여의치 못하니 이 사유를 적어 총영사관과 외무성에 탄원서를 제출하라 하기에 그 말과 같이 제출하였더니, 오히려 이제 와서는 탄원서가 무효하다 하니, 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신용만 관청에 떨어지게 한 점.
  16. 1921년 11월분 각 현에 시찰단이 출장할 때, 수행인 엄주익의 여비 금 50엔을 횡령함.
  17. 1921년 11월분 시찰단이 각 현에 출장할 때, 수행인 이능만의 여비 금 50엔 영수하여 금 24엔(소양 30원대)만 본인에게 교부하고 잔액 36엔을 가로챘.
  18. 1920년 4월분 우에다(上田) 고문계서 각 현을 시찰할 때에 엄주익, 박봉순(朴逢舜) 양인의 상여금 600엔을 가로챘.
  19. 1922년 4월분 시찰단 일행이 각 현 시찰을 완료하였을 때에 해당 수행인 엄주익의 상여금 160엔을 가로챘.
  20. 보민회에 대한 기밀비라는 것은 그 용도가 다른 경비와 같지 않아 보민회의 발전상 또는 국가조력의 만분지일이라도 채색함에 소용하는 가장 긴급(緊要)한 금액이라. 최정규가 매월 200엔씩 영수하여 국가의 조력은 고사하고 보민회에 대하여도 하등 유효하게 소용한 일이 전무하고 다만 개인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용하였으니 보민회의 장래 발전에 대하여 심히 통탄할 바임.
  21. 보민회의 본부에 대한 1년 보조액이 2만 2,000여 엔인바, 그중 역원에 대한 수당이 매월 700여 엔과 가옥세(家屋稅), 기타 잡비를 합하여 백여 엔이니 매월 본부에 대한 경비가 총 900엔이면 충분한지라. 그러한즉 1년 총액으로 계산하면 1만여 엔에 불과한 것이요, 작년 지부 회장 회의 시에 금 2,000엔을 위치한 사이 있고 그 나머지 잔액금은 어디에 소용하였는지 맹목적 장부에만 기입하고 사실은 전무하오니

이 역시 조사할 일이며, 교제비가 매월 200엔씩인바 이로써 보민회의 발전상 또는 국가의 조력상 하등의 의미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음.

이상 기재한 사실은 모두 본인 등이 확인한 바인 고로 대략 진술이요, 이외에도 보민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4년간 행한 허다한 불의한 일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움.

〈출전 : 陳情書, 1923년 7월 21일,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2,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12) 만주 보민회 보조비에 관한 건

기밀공(機密公) 제55호

1921년 10월 20일

봉천 총영사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외무대신 백작 우치다 고사이(内田康哉) 전(殿)

### 만주 보민회 보조비에 관한 건

10월 4일자 기밀로 보낸 제45호에서 밝힌 본 건에 관해서는 이미 9월 26일 기밀공 제52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동 회의 본부를 봉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 임원들에게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무를 폐지하고 고문과 간사의 수를 줄여 조사원은 그 대부분을 지부에 소속시키는 것 외에, 이번에 별도로 부탁한 조사반의 실시에 있어 관전(寬甸), 집안(輯安), 임강(臨江), 장백(長白), 그리고 유하(柳河) 5개 현에 각 지부를 증설하여 조사를 종료한 뒤에 동 지역의 조선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본 연도 경비는 별지 예산명세서와 같습니다. 위의 취지를 상세하게 살피신 후에 경비 지출 방안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당 조선총독부 보조금은 8월에 한정해 지출하기 어려우니, 9월과 10월분 보조금은 종전대로 월액 1,500엔, 2개월분 3,000엔을 시급하게 지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예산서를 첨부하오니 품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민회 회보에 관해 10월 1일 아삼(亞三) 보통 제85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보는 8월 이후 휴간되었고, 11월부터 다시 체재를 정비해 발행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살펴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을 올립니다.

본신(本信) 사본 송부처 : 조선총독

### 만주 보민회 1921년도 경비 예산서

— 금 1만 6,500엔(1921년 11월~1922년 3월까지 5개월간의 경비)

내역

금액(엔)	비목	월액(엔)	비고
1,000	고문 2명	150, 50	고문 1명은 흥경에 주재
750	회장 1명	150	
500	부회장 1명	100	주로 회보 발간 사무에 사용
200	간사 1명	40	일·중 통역과 회보 사무에 사용
350	서기 1명	총 70(각 35)	1명은 회보 사무
600	조사원 4명	총 120(각 30)	봉천 부근의 조사에 따른 각 지부와의 연락 임무
75	소사 1명	15	
250	월세	50	
50	통신비	10	
50	소모품비	10	
250	여비	50	월1회 고문 또는 회장을 각 지부에 출장 보내 감독케 함.
250	교제비	50	
750	기밀비	150	주로 고문 최정규의 기밀비로 충당함.
1,250	회보 발간비	250	2,000부, 월4회 발간
100	연료비(신탄)	20	
75	잡비	15	
10,000	지부보조금(8개 현)	2,000	교육비, 조사비, 그 밖에 지부에 250엔을 보조함
16,500	합계	3,300	

〈출전 : 滿洲保民會補助費二關スル件, 1921년 10월 20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1,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13) 보민회 지부 회장 회의에 관한 건

기밀공(機密公) 제84호

1922년 11월 3일

봉천 총영사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외무대신 백작 우치다 고사이(內田康哉) 전(殿)

#### 보민회 지부 회장 회의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9월 1일부터 6일간 이 지역에서 개최한 보민회 지부 회장 회의기록 별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부하는 바이니, 검토하시길 바라며 이에 보고합니다.

본신 사본 발송처 : 조선총독, 관동장관, 안동, 철령영사, 통화, 해룡분관주임,  
평안북도지사

1922년 9월 1일 개최

#### 만주 보민회 지부 회장 회의사항

##### 만주 보민회 지부 회장 회의 출석자 명부

지방별	직함	이름	지방별	직함	이름
보민회 본부	고문	최정규(崔鼎圭)	환인 지부	회장	안홍익(安鴻翼)
동(同)	회장	이인수(李寅秀)	동(同)	감독	게이 마사오 (毛井正男)
동	부회장	장지량(張之亮)	유하 지부	회장	이응두(李應斗)
동	간사	이해수(李海秀)	동, 양자초지회	회장	박원호(朴元昊)
동	서기	김주익(金周益)	동, 삼원포지회	회장	이동훈(李東勳)
흥경 지부	회장	백형린(白衡璘)	동	서기	정병한(鄭炳翰)
동	부회장	홍대영(洪大英)	동, 북산성자지회	회장	이진하(李珍河)
동	감독	사사키 준 (佐佐木準)	유하 지부	감독대리	정면극(鄭冕極)
도화 지부	회장	이동성(李東成)	관전 지부	회장	김용국(金用國)

동	유지(有志)	이화영(李和英)	동	부회장	강경해(姜鏡海)
동	감독	나준 유키 (奈順勇喜)	임강 지부	회장	손희상(孫熙相)
임강 지부	감독	마쓰쿠마 칸타로 (松隈堪太郎)	철령 조선인회	회장	장의근(張宜根)
집안 지부	회장	이완구(李完求)	봉천 조선인회	회장	박창식(朴昌植)
동	서기	김경호(金景鎬)	안동	유지	임윤기(任倫基)
동	감독	이마나가 가오루 (今永 薫)			
장백 지부	회장	주림(朱林)			
동	유지	박기윤(朴基潤)			
동	감독	기무라 도모하루 (木村友治)			
안동 조선인회	회장	이태현(李泰鉉)			
동	유지	장기식(張驥植)			
무순 조선인회	회장	이중무(李重武)			

## 지방 상황 보고

### 1. 홍경 지부

#### 1) 인구

인구는 남녀 합쳐 약 2만 2,000명으로 가구 수는 약 4,100호입니다. 거주자는 평안북도 출신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출신이 많습니다.

#### 2) 교육

홍경현 내 및 흥동(興東)에 보통학교 2곳이 있고, 모두 총독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당 11곳이 있고 모두 한문 및 습자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은 약 200명이 있습니다.

### 3) 산업

산업은 오로지 농업을 하고 있고 중국인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유지를 경작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농작지 면적은 수전 3,114상지(晌地), 밭 약 9,500상지, 합계 약 1만 2,000상지입니다만, 수확물은 거의 대부분 지주가 가져가는 상태입니다.

### 4) 생활상태

이곳에 들어온 조선인은 비교적 산간협곡에 흩어져 살면서 황무지나 화전 등을 소작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확물은 대부분 콩, 옥수수, 감자 등으로, 콩은 일용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판매하고 주식물로 옥수수와 감자를 먹고 있으며 곡물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의복원료품 및 식염 등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저장할 여유가 없고, 생활의 정도는 매우 빈곤하지만 이번 연도부터 농무조합을 설립해 빈민에게 농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 5) 위생

이곳에는 의료기관으로 조선총독부에서 파견한 병원이 1곳 있고, 때때로 지방으로 진료를 나가 지방 주민들에게 약을 주고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하략)

〈출전 : 保民會支部會長會議二關スル件, 1922년 11월 3일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2,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14) 만주 보민회의 흥경현 왕청문 동포 학살의 광경

— 부기 —

### 만주 보민회의 흥경현 왕청문(旺淸門) 동포 학살의 광경

이 항목은 전 흥경현 왕청문 거주 피해자 유족이자 현재 봉천(奉天)에 거주하는 어느

조선인의 구술과 그의 가슴속에 쌓인 분노를 헤아린 요약이다.

일전에 총본부를 흥경에 둔 만주 보민회가 지난 1920년 만주군을 배경으로 삼아 취한 행동은 매우 잔인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듣고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였다. 사법, 행정, 군사 등의 권한을 남용하는 보민회는 아마 현대의 세계 어디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보민회 간부 이하 회원들과 서로 맞지 않는 동포는 누구 인지를 불문하고 그들의 흥기에 쓰러지고 그들의 위협에 눈물을 흘렸으며, 모두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 그 참화가 가장 심한 경우는 한편으로 제우교의 세력 확장에 뜻을 둔 그들이 종래 서로 종교적으로 기시하고 반목하던 기독교도를 적대시한 것으로, 그들은 당시 주로 이 방면에 전력을 다하였다. 흥경현 왕청문의 동포 학살과 같은 사건은 그야말로 그 일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때는 1920년 음력 7월 20일, 흥경현 왕청문에 거주하던 기독교도들은 대거 생명을 위협하며 흥분하여 횡포를 저지르는 최정규 일파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다가오는 신변의 위협을 피해 삼삼오오 모여 흥경 보민회 본부에 와서 가입하고 귀순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최정규는 이를 거절하고 전부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간부 2, 3명은 강하게 이에 반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간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최정규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봉천 총영사관에 교섭한 결과 철령(鐵嶺) 및 공주령(公主嶺)으로부터 대규모 보병과 기병 토벌대의 파견을 약속받은 최정규는 의기양양하여 토벌대의 선두에 서서 안하무인으로 일행이 흥경에 도착하자 곧바로 뛰어난 일본군의 행동으로 지방의 불온한 무리들을 일소해야 한다며 위협했다. 때는 마침 천황폐하의 천장절을 맞아 먼저 입회한 7명에게 축하연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들은 모두 자택을 출발해 그날 오전 중에 동창대(東昌臺) 보민회 지부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토벌대는 무장을 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 동포들이 도착하자, 보민회 지부에는 감방 설비가 없기 때문에 미리 중국 관헌과 교섭을 한 뒤 곧바로 이들을 그곳에 감금했다. 21일 옥문을 열어 그들을 풀어내 모두 포박을 하고 우리 군과 함께 흥경현 총본부에 연행해야 한다며 아무런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두 대의 중국 마차에 분승시킨 뒤 갖가지 모욕을 주었다. 도중에 갑자기 인적이 드문 대로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별령곡(別嶺谷) 숲속에서 그 첫 번째 행동으로서 일행 7명 가운데 이시항(李時恒, 보민회 평의원 왕청문 백가장. 백가장은 일본의 구장. 연령 62세), 지하영(池夏榮, 기독교 학교 교사. 연령 27세), 최형구(崔亨球, 동. 연령 42세)를 폭살하

고 중국인 마부로 하여금 매장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4명인 이근정(李根貞, 보민회 평의원 기독교회 장로. 연령 46세), 김도준(金道俊, 동. 연령 50세), 황원후(黃元厚, 보민회 분회장. 연령 45세), 이봉규(李鳳奎, 보민회 평의원 기독교 영수. 연령 46세)는 거기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폭살하여 이 역시 마부를 시켜 매장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땅을 고르게 한 뒤 떠났다.

그런데 그런 횡포한 짓에도 성에 차지 않은 그들은 같은 날 다시 왕청문에 돌아가 위의 피살자 및 그 지역의 민가를 가택수사하고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가택수사를 하여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와 의류를 남김없이 불태웠다. 그때 마침 어떤 80대의 노파가 비명을 지르며 활활 타오르는 불을 피해 집밖으로 뛰쳐나온 뒤 다시 미친 듯이 집으로 들어가 상의 한 벌을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최정규는 이 불쌍한 노파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불길 속으로 던지려고 하였다. 이때 일행의 한 군인이 그 지나친 행동을 참지 못하고 “80대의 노파가 무엇을 알겠는가, 용서해주게”라며 상의를 돌려주라고 종용했지만, 고집스러운 최정규는 결국 그것을 불길 속으로 던지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등, 이러한 종류의 잔인을 셀 수도 없이 저질렀다. 이리하여 같은 달 24일 그 지역의 모든 기독교회당, 학교, 민가를 파괴하거나 불태웠고, 기독교도 및 일반 조선인 12명은 모두 앞서 언급한 수단으로 참살되었다. 이들 동포 피해자 유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전전공공하며 오랜 세월 살아온 제2의 고향 흥경을 뒤로 하고 유랑하면서 수많은 한을 품고 봉천으로 피해 왔다. 그러나 십간방(十間房)의 이곳, 금색 찬란하고 국화장(菊花章)이 빛나는 즐비한 건물, 올려다보니 저 높은 곳에서 옥일기(旭日旗)가 펄럭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이곳 봉천제국 총영사관에는 마치 염라대왕과도 같은 최정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약자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손에 땀을 쥐는, 동일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이 어찌 (……) 오호라!

〈출전 : 附記 滿洲保民會の興京縣下旺清門同胞虐殺の光景, 『在滿鮮人問題と滿洲保民會』, 滿洲朝鮮人親愛義會本部, 21~23쪽, 일본 시가현립대학 소장〉



## 15) 봉천성 조사반 파견 및 실시에 관한 건

봉천성(奉天省) 내 조선인의 보호 단속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경비예산은 별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중에서 조사반의 순찰은 지난해 4, 5월의 교체시점에 장작린(張作霖)의 승인을 받아 중국 순경과 함께 유력한 친일조선인을 안내역으로 삼아 관동도독부 및 조선총독부와도 회합을 가진 뒤 필요한 인원 및 경비 등은 위의 두 기관에서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비로소 실시한 것이다. 부원을 두 반으로 나누어 주요 조선인 부락을 조사하여 불령선인을 색출해 이를 검거하거나 혹은 귀순을 권유하는 동시에 양민들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보민회의 설치를 종용하거나 조성했다. 이는 필경 만주에 있는 다수의 조선인들로 하여금 만주의 중국 관헌은 제국을 위해 그들을 엄중 단속하고 행동을 감시한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제국 정부의 보호단속이 준엄하다는 사실을 알려, 말하자면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는 시정을 펼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그 효과는 매우 뛰어난 것이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이번 제국군대의 출동 내지 토벌행군에 의해 한때 자취를 감추었던 불령선인들이 다시 소재 부락에 돌아와 출몰하고 있다는 정세에 대해 □□를 겸하는 세 반으로 이루어진 조사반을 조직하여 중국 측과 연락을 취해 봉천 내의 압록강 건너편 지방을 순찰하게 하여 불온한 무리들의 기세를 꺾는 동시에 보민회의 보급을 도모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과 일본의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또한 이는 불온한 무리들에게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그 효과는 결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런 종류의 기획을 연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결국 불령선인들로 하여금 만주를 그들이 음모를 획책하는 근거지로 삼으려는 것을 단념케 하기 위해 별지에 첨부한 계획안 가운데 이 건은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로 생각된다.

위의 계획은 이미 중국 측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각 반을 16명(5명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참가)으로 하고, 각 반에 중국 순경 5명을 참가시켜 장 성장(省長)은 각 관계 지방 관헌에게 그 계획을 비밀리에 전할 것이다.

또한 이번 건 계획의 요령 및 경비예산은 별지에 첨부한 바와 같고, 조선총독부는 이번 계획에 경관 15명을 파견하고 그 경비는 자체 마련할 것이다. 이번 조사반의 조직과 파견에 필요한 경비예산액 약 4만 원에는 조선총독부 측의 소요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봉천성 내 조선인의 보호단속에 관한 시설 및 경비예산의 건

만주의 조선인, 그중에서 봉천성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단속과 보호, 지도를 위해  
긴요한 시설에 관해 봉천의 아카쓰카(赤塚) 총영사가 신청한 것과 관련한 계획 실시안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반의 조직 4만 194원

(계획 요령)

- (1) 지난번 예와 같이 일본과 중국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형식을 취해 장 성장으로 하여  
여금 각 관계지방의 관헌에게 비밀리에 전한다.
- (2) 세 반으로 조직하여 각 반은 80일을 일정으로 한다.
- (3) 반원은 각 반에 일본인 경부 1명(관동청 경찰관), 중국 순경 5명, 보민회원 조선인  
5명 외에 조선총독부 경관 5명(이에 대해서는 총독부가 자체 경비 마련), 계 16명  
으로 조직하여 모두 무장을 하고 권총을 휴대한다.
- (4) 경비예산은 각 반 1만 3,398원, 합계 4만 194원이 필요하다.

### 2. 보민회의 설립 보조 경비 9만 5,000원

보민회는 이번 연도에 한정해 조선총독부로부터 1만 8,000원의 보조를 받아 현재 흥경  
외에 2곳에 설치하였으나 한층 더 이를 보급하고 내실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4, 5년간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다.

(계획 요령)

- (1) 총본부를 흥경에 두고 일본인 경찰관 3명을 고문으로 하여 사복차림으로 배치한다.
- (2) 지부를 8곳 즉 통화, 환인, 관진, 집안, 임강, 장백, 유하, 해룡에 설치하고 고문으로  
사복 순경 2명을 배치한다.
- (3) 보민회 감독을 위해 경찰관을 순회 조사하게끔 하고 각 지부에서는 공동으로 밀정  
을 사용한다.
- (4) 경비 보조액

경비의 보조는 본부, 지부의 회장 이하 관계임원의 급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는 것  
이다.

본부 연간 1만 8,000원

지부 연간 4만 8,000원(각 연간 6,000원)  
감독 경찰의 여비 및 밀정비 2만 4,000원(각 연간 3,000원)  
예비비 5,000원  
누계 9만 5,000원

### 3. 제우교 교회 건설비 2만 원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존주의(共存主義)를 설파하고 회원 5,000가족 이상이 있는 본 교도를 이용하기 위해 그들이 열망하는 교회당을 흥경에 건축할 경비를 보조한다.

### 4. 조선인 선전기관 보조비 2,460원

조선인 선전기관으로서 현재 흥경에서 작년 8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주간지 『보민회회보』의 내실을 다지고 계속하여 사상적으로 잘 인도하는 데에 노력한다.

### 5. 불령선인 체포 현상금 2만 원

압록강 연안 서간도 일대의 불령선인 가운데 수령으로 보이는 100여 명을 등급별로 나누어 중국 관헌의 이름으로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게끔 한다.

### 6. 위생기관(의사) 설립 보조비 2만 1,600원(각 2,400원)

보민회 각 본부, 지부에 의사 1명(월급 200원)을 배치한다.

이상 누계 22만 5,060원

〈출전 : 奉天省調査班派遣實施二關スル件, 1920년 2월 10일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調査班關係』,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16) 조사반 행동에 관한 건

1921년 6월 10일자 봉천 요시하라(吉原)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内田) 외무대신 앞 보고 요지

### 조사반 행동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2월 16일자로 보고한 이후 3월 중 조선 평안북도와 접경지인 관전(寬甸), 집안(輯安) 지방에 불령선인들이 제멋대로 횡행함에 따라 조선의 치안을 해칠 우려가 있어 평안북도에서는 불령선인 토벌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그 지방의 중국 관헌의 원조를 받아 불령선인들의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자 불온한 무리들은 도망쳐 환인(桓仁), 통화(通化), 흥경(興京) 지방에 들어가서 보민회원들을 비롯해 양민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진압할 필요를 인정하고 조선총독부에서 3,000원의 지출을 받아 평안북도에서 순사 2명을 파견했다. 별지에 첨부한 바와 같이 제1회 조사반원을 조직하여 5월 21일부터 행동을 개시했는데, 여기서 상당한 성과를 올림으로써 계속해서 제2회 조사반을 조직해 행동하고 있다.

- 별지 -

#### 제1회 조사반

제1회 조사반은 갑, 을, 병 세 반으로 나누어 5월 21일부터 행동을 시작하여 같은 달 29일에 일단 예정된 행동을 종료했다. 그 편성 및 행동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 편성

##### (1) 갑반

순사부장 사토 린조(佐藤麟造, 흥경 파견소 겸무)

동(同) 아카이시 다다시(明石正, 평북 경찰부 파견원)

보민회 총무 김천을(金天乙)

보민회 조사원 9명

중국 경찰구관(區官) 1명

중국 순경 11명  
계 24명

(2) 을반

순사부장 오가와 기이치(小川喜一, 평안북도 경찰부 파견원)  
보민회 본부간사 이상현(李尙賢)  
동(同) 조사원 10명  
중국 경찰 15명  
계 27명

(3) 병반

보민회 총무 최정규(崔晶圭)  
보민회 조사원 10명  
중국 순경 10명  
계 21명

## 2. 행동 경과

(1) 갑반

1. 경로

5월 21일 흥경을 출발하여 도중 조양구(朝陽溝), 대황구(大荒溝), 호자구(蒿子溝), 마가구(馬家溝), 동화락(東伙洛), 동가구(修家溝), 목두화락(木頭伙洛), 소외자(小外子), 도령보자(徒嶺堡子), 백가보(白家堡), 팔도구(八道溝), 마권자(馬圈子), 평정산(平頂山) 등 각 촌락을 조사한 뒤 5월 29일 흥경으로 돌아옴.

2. 상황

대한독립 특파 암살대 지휘장으로 불리는 지광운(池光雲)이라는 자가 이끄는 무리 약 30~40명이 5월 상순부터 서서히 환인현에 침입해 들어왔다. 이들은 각지에 독립단비 각 호 1원 50전 및 짚신 1켤레를 징수, 또는 보민회원과 친일조선인 등을 구타하고 살해, 또는 부유한 자를 인질로 납치해 거액의 금품을 강요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았다. 이에 다소 재산을 갖고 있는 자 등은 다른 곳으로 옮겨 피난하는 형국이었지만, 조사반의 출

등을 들은 불령선인 등은 재빨리 환인현 방면으로 도주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매우 안도하게 되었음.

### 3. 성적

각지의 중국 보민회 단원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조사반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반의 행동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덕분에 아무런 장애도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

행동하던 중 22일 오전 9시 도령보자 부근에서 1명의 불령선인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저항한 탓에 사살했음.

## (2) 을반

### 1. 경로

5월 22일 홍경에서 행동을 시작하여 동창태(東昌台), 조양구, 남차(南岔), 도령보자, 홍묘자(紅廟子), 사가보(查家堡), 반령구(盤嶺溝) 등지를 조사한 뒤 5월 27일 홍경으로 돌아옴.

### 2. 상황

갑반이 조사한 지방의 상황과 큰 차이는 없고, 횡행하는 불온분자 또한 지광운의 부하들이 대부분이었음. 5월 상순 이래 금품의 강제 징수는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임.

### 3. 성적

5월 24일 도령보자 부근에서 지광운이 이끄는 불온단체 일행 37명과 조우함(불온한 자들은 모두 소총이나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음). 갑반의 지원을 받아 교전한 결과 3명을 체포했고 모젤 권총 2정과 탄환 135발을 압수했음. 체포자 이름은 다음과 같음.

본적 : 평안북도 의주군 동화면 정산동

주소 : 본계현 성장화피구

김세근(金世根), 22세

본적 : 평북 철산군 서림면 신안동

주소 : 홍경현 홍남 사가보

김상봉(金尙奉), 34세

본적 : 평북 철산군 혜면 강하동

주소 : 홍경현 홍남 사가보

정홍주(鄭洪周), 31세

이상의 3명은 압수품과 함께 동창태 중국 경찰국에 의탁 구금 중.

5월 26일 반령구에서 지광운의 부하인 그 지역의 김여연(金麗淵)이라는 자를 살해했음.

홍경현 반령구 거주

암살대원 원승보(元承甫), 23세

홍경현 반령구 거주

암살대원 최준식(崔俊植), 48세

이상의 2명을 체포하여 다음날 27일 홍경으로 압송하는 도중 저항하여 사살했음.

### (3) 병반

#### 1. 경로

5월 23일 행동을 시작하여 홍경 출발, 도중에 왕청문 삼도구, 홍묘자, 환인현, 향수하(响水河子) 방면으로 조사를 한 뒤 5월 27일 홍경으로 돌아옴.

2. 해당 지방의 불온한 자들이 횡행하는 상황은 앞서 서술한 을반의 행동 지방과 큰 차이가 없음.

#### 3. 성적

5월 23일 삼도구에서 주소 홍경현 삼도구, 독립암살단 총장 최봉희(崔鳳熙) 48세를 체포해 독립신문 3장, 독립선전문 7장, 독립민적부 3부 및 인장 1개를 압수했음.

5월 24일 삼도구 및 사도구에서 독립단 비적 징수원을 비롯한 7명을 체포했으나 조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5월 26일 모두 엄중히 훈계한 뒤 석방했음.

5월 26일 삼도구에서 홍경현 삼도구에 거주하는 독립암살대원 최학기(崔學基, 일명 최인상(崔仁祥)) 25세를 체포하여 화승총 1정을 압수했음.

23일 체포한 최봉희 및 최학기는 27일 홍경으로 압송하던 중 포승줄을 절단하고 압송

자의 충기를 탈취하려고 저항함에 따라 사살했음.

---

1921년 6월 6일자 봉천 요시하라 총영사 대리 발신 사이토 조선총독에게 보내는 통보  
요지

### 제2회 조사반 편성의 건

5월 상순부터 실시한 흥경 지방의 불령선인에 대한 제1회 파견 조사반은 상당한 성적을 올려 일단 예정 조사를 종료했다. 그런데 불령선인 일부는 우리 조사반의 활동으로 다른 지방으로 도피하였다. 이에 이하의 계획대로 제2조사반을 조직하여 6월 초순부터 행동을 개시할 예정이므로 양해를 구한다.

#### 1. 제1조사반

보민회의 최 총재, 최왕생(崔王生) 순사, 조사원 10명, 순경 10명으로 편성하여 6월 3일 신빈보(新賓堡)를 출발하여 홍묘자로 향하여 그곳에 본부를 두고 그 부근을 조사했음(예정 30일간).

#### 2. 제2조사반

6월 10일 환인에서 오가와(小川) 순사부장과 모리야마(森山) 보민회 감독, 조사원 10명, 순경 10명으로 편성하여 통화 분관의 승낙을 얻어 같은 달 11일부터 환인현 대아하(大雅河)를 조사한 뒤 일단 환인으로 철수했음. 그 뒤 다시 취리두(臭利頭), 대은보(大恩堡), 우모구(牛毛溝), 대양구(大洋溝), 이호래(二戶來)를 조사한 뒤 홍묘자에 가서 제1반과 합류해 신빈보로 돌아옴(예정 10일간).



-----

1921년 6월 21일자 봉천 요시하라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内田)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보고 요지

## 제2회 조사반의 행동에 관한 건

홍경 방면의 불령선인 토벌을 위해 출동한 제2회 조사반 제1반의 행동에 관해 홍경의 사사키(佐佐木) 경부보로부터 이하와 같은 보고가 있었다.

1. 6월 4일 예정한 바와 같은 편성을 끝내고 같은 날 오전 11시 홍경 신빈보를 출발해 다음날 5일 정오 홍묘자에 도착한 뒤 곧바로 두 반으로 나누어 제1대는 사도구(四道溝) 방면을, 제2대는 오도구(五道溝) 방면을 향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지방에는 3, 4일 전 5~6명의 불령선인들이 소총 또는 권총을 휴대하고 들어와 자금을 강요한 뒤 1주일 이내에 다시 올 때까지 돈을 준비하라고 명하고 떠났다고 한다. 또한 대청구(大清溝), 도령보자 부근을 20~30명의 불온한 무리가 통과하는 것을 본 자가 있지만,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따라서 다음날 6일 오전 4시경 다시 대청구, 도령보자 방면으로 향해 출동하던 도중 외남산(外南山)에서 독립단 통신원 김용건(金溶乾), 나이 44세를 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그 지방에 출몰하고 있는 불온분자들이 모두 2, 3일 전에 조사반의 출동을 눈치채고 이미 환인현의 이호래(二戶來), 묘아구(廟兒溝), 유림자(柳林子)로 떠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조사반의 토벌을 벗어날 수 있었다. 6월 8일 환인현 향수하자에 가서 그 지역의 순경국과 협의한 결과 순경 13명의 지원을 받아(홍경현 순경은 관할이 달라서 거기서 되돌려 보냈고 단 2명만 동행) 곧바로 셋으로 나누었다. 제1대는 8일 오후 5시 행동을 개시하고 환인현 서부 홍양석(紅陽石)을 거쳐 이호래로 향하는 도중 각지를 수사하면서 전진했으나 불온분자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그러나 화영자(花英子) 부근에서 불온분자로 보이는 자 5명을 체포하고 9일 오후 3시 이호래에 도착해 다른 대원과 합류했다. 체포한 5명을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다.

제2대는 환인현 항도구자(恒道溝子), 고태자(高台子), 화첨자(花尖子) 등지를 수색하면서 9일 오후 4시 이호래에 도착하여 다시 그 부근을 조사했으나 불온분자들은 모두 도주한 뒤였고 남은 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제3대는 환인현 문자구(文子溝)를 거쳐 각지를 수색하면서 이호래에 도착했으나 이

또한 수확은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조사원들과 합동으로 다시 묘아구 및 유림자 방면을 수색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10일 오전 3시 이호래를 출발해 세 갈래로 나뉘어 산 정상과 계곡 등지를 각각 수색하면서 불온분자로 보이는 40여 명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암살대원 차현로(車賢路)가 있음을 발견했으나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엄중히 경고한 뒤 석방했고, 조사대는 일단 6월 11일 홍묘자로 철수했다. 이로써 체포한 김용건, 차현로는 6월 14일 홍경으로 압송하여 현재 조사하는 중인데, 그 본적과 주소 등은 다음과 같다.

본적 : 평안북도 벽동군 오북면  
주소 : 환인현 대청구 외남산  
독립단 통신원 김용건(金溶乾), 44세

본적 : 평안북도 철산군 고면 신곡동  
주소 : 환인현 이호래 묘구  
암살대원 차현로(車賢路), 31세

또한 이호래 부근 각지에 불온분자들은 다음의 번역문과 같은 인쇄물을 붙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 기(記) -

번역문(석판으로 찍어 세로 1척, 가로 1척 3촌의 종이를 사용했음)

중국 관민상학계(官民商學界)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천하의 나라 모두 이웃나라와 교류하는 길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 밀접함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미치는 바가 없다. 또한 동병상련의 중국과 한국의 절박함은 여기에서 새삼 말하지 않더라도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다만 이를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알고 있음은 결국 모르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지금의 러시아와 한국은 실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호부호(相互扶護)의 밀약을 체결했다. 돈과 물건의 교통이 없는 미국과 한국은 꿈에서도 다다르지 못하는 나라라는 관계에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후원회를 설치했고 후원자는 실로 엄청난 수에 달한다. 땅이 가까운 이웃나라도 아니고 동병상련에 있지도 않으면서 능히 정의로 서로 돕는 것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중국과 한국의 밀약이 절박

함을 무관하게 지켜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청일전쟁 당시 이미 그 하나를 잃었다는 데서 이를 알아야 한다.

애당초 한국이 독립하지 못하면 중국은 결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즉 광호(廣湖) 두 성의 현인과 지사들은 깊이 생각하여 서로 의를 강구하고 널리 동병(同病)을 우려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친우회를 설치해 양국이 살아가는 필요 기관으로 삼아야 마땅한데, 대체 어째서 만주는 중국과 한국의 실제 접경지이면서 관민과 상학계의 여러 군자들은 하나같이 서로 동정하지 않는다 말인가. 지금 여기서 간절히 바라는 바는 결합이 아니라, 요컨대 보호하면서 방해하는 일 없이 병사의 위력을 갖추지 말고, 안으로는 도적의 광분을 방지하지 않고, 밖으로는 가장(假裝) 비적인 흉적들이 3성에 들끓어 중국과 한국의 큰 화근이 되는 것을 막게 된다면 한국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도 결국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단체의 설립은 벌써 1년 가까이 되면서 사려 깊은 중국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근래 중한친우회가 설립되어 만삼성(滿三省)에 골고루 동부동흥(同扶同興)의 표상을 천사(天賜)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거쳐 만나게 된 기회를 바라건대 더욱더 동등한 영리를 서로 돕고 보호한다면 이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혈원(血願)하는 바이다.

1921년 4월

대한독립단 총단소(總團所)

-----  
1921년 7월 1일자 봉천 요시하라 총영사 대리가 우치다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보고 요지

### 환인현 방면에서 행동한 제2회 조사반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흥경에 있는 사사키(佐佐木) 경부보의 보고는 별지에 첨부한 바와 같다.

- 별지 -

1. 6월 5일 오전 7시 조사원 오정근(吳貞根) 이하 6명은 불령선인들의 상황 조사를 위해 환인현 간고자(干沟子)로 출발. 보민회 총회장, 모리야마(森山) 감독 이하 11명

- 은 8시 출발하여 오후 6시 통화현 삼과유수(三棵榆樹)에 도착. 그 지방에 이주한 조선인의 정황을 조사했으나 달리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음.
2. 6월 6일 오전 4시 40분 출발하여 영액포(英額布)에서 회식을 한 뒤 오후 6시 쾌당모자(快當帽子)에 도착해 숙박. 그 지방의 상황을 조사했는데 일전에 불온한 무리에 가담한 최종삼(崔鍾三), 유풍수(劉風洙) 2명은 한때 도주했지만 지금은 현 주소지로 돌아와 근신하고 있음.
  3. 6월 7일 오전 4시 출발하여 12시 통화에 도착하고 숙박. 그 지방의 정황은 변함없이 일반 인민들은 평온함.
  4. 6월 8일 오전 8시 통화의 보민회 지부 회장 이동성(李東成)의 안내로 총회장 이하 3명은 영사관 분관의 주임 및 경찰서장을 방문하여 환인의 보민회 조직 및 불온한 자들의 토벌에 대한 모임을 가졌음.
  5. 6월 9일 영사관 분관에서 무기 ‘스미스’식 권총 9정을 빌려 가무라(加村) 순사 일행과 함께 총회장, 사사키, 오가와, 모리야마 감독 이하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오후 5시 쾌당모자에 도착하여 숙박했음.
  6. 6월 10일 오전 4시 사사키 경부보 이하 2명은 흥경현을 향해 출발했고, 총회장, 모리야마 감독 이하는 환인현으로 향하던 도중 두도구에서 엄주익(嚴柱翊) 이하 2명을 먼저 파견한 오정근 일행과 연락하기 위해 간고자에 파견. 오후 5시 괴마자(拐磨子)에 도착하여 후가점(候家店)에 숙박. 그 지방의 정황을 조사하니 때때로 불온한 자들이 배회하고 있었음.
  7. 6월 11일 먼저 간고자에 파견한 오정근 등은 오전 6시에 일행과 만나 환인현으로 향해 삼황구(三荒溝)에서 아침을 먹고 오후 5시 30분에 환인현에 도착하여 숙박했음.
  8. 6월 12일 오전 8시 총회장은 그 지역에 파견된 사토 순사를 방문했고 오가와, 모리야마, 가무라 3명은 환인현 지사를 방문. 그 지방의 정황을 조사하니 환인현 동구에 거주하는 최송(崔松) 등 40여 명은 부근 양민을 협박하여 군자금을 빼앗기 위해 있다고 함.
  9. 6월 13일 오전 8시 총회장은 환인현 보민회 지부 회장인 김용하(金容河)와 회합을 가진 뒤 보민회 임원 3명을 7명으로 늘리고, 그 지방의 정황은 남구에는 불령선인 특과대장 조대룡(趙大隆) 이하 수십 명이 관전(寬甸) 중앙과 연락하고 곡매(谷每)에 통신원을 배치해 자금 강탈을 감행하고 있다고 함.
  10. 6월 14일 총회장 이하 3명은 환인현에 당분간 머물러 있기로 하고 오가와 감독 이하 10명은 중국 병사 10명을 데리고 남구 대웅하(大雄河)로 향해 오후 4시 중국 술

양조소(釀造所)에 도착해 투숙. 오늘 이하 불온한 자 2명을 체포했음.

본적 : 평안남도 평양부 대동군 임원면 운월리

주소 : 관전현 모전자패

암살대 통신원 이성국(李成國), 18세

본적 : 평안북도 삭주군 남서면 고성리

주소 : 관전현 모전자삭

암살대 통신원 이병렬(李炳烈), 23세

위 체포자의 자백에 따르면 관전현 모전자패(毛甸子牌)에 독립단 총본부를 두고 총단장 대리 이운해(李雲海, 40세)는 단원 200명을 4개 소대로 조직해 그 가운데 2개 소대는 잠복대라 부르며 사방으로 파견해 군자금 강탈과 친일 조선인의 암살을 행하고 있다고 함.

소지 무기로는 30년식 보병총 80정, '모젤'식 권총 20정, '콜트'식 권총 30정, '브로닝'식 권총 약간을 갖고 있음.

그 지방 정황은 근처 고창구(庫倉溝), 마제구(馬蹄溝)에서 불령선인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11. 6월 15일 오전 4시 이정근 이하 6명은 중국 병사 10명을 인솔하여 고창구, 마제구의 불령선인들을 단속하기 위해 출발. 오가와, 모리야마 이하 3명은 그 지역 순경 4명을 인솔하고 백랍자(白拉子)로 향해 마제구에서 이정근 일행과 합쳤음. 이정근 일행은 마제구에서 암살대원 이성국, 이병렬 2명을 체포하였고 독립단 군자금 30원을 압수.
12. 6월 16일 오전 4시 출발하여 오후 5시 목맹자(木孟子)에 도착해 숙박. 그 지방에는 때때로 불령선인들이 왕래하고 있는 모양이었음.
13. 6월 17일 오전 4시 이정근 이하 7명은 목맹자 부근 전체를 수색한 뒤 오전 8시 출발하여 이호래로 향했음.
14. 6월 18일 오전 5시 환인에서 인솔해온 중국 병사 10명은 귀환시키고 이호래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병사 10명을 인솔하여 홍묘자로 향해 오후 3시경에 도착한 뒤 중국 병사들은 귀환시켰음.
15. 6월 19일 오전 5시 홍묘자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 병사 10명을 인솔하여 흥경현으로

향해 오전 11시 동창대(東昌臺)에서 중국 병사들은 귀환시켰음.

---

1921년 7월 8일자 봉천 요시하라 총영사가 우치다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전보 요지

### 통화에서 온 전보

일전에 관전현에서 토벌한 불령선인 대부분은 환인 및 통화현으로 도주하여 암살과 박해 등 불온한 행동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인심이 동요하여 더욱 불안한 상태에 있음. 특히 통화현 팔도강 부근에는 또다시 유력한 부대가 횡행하여 주민들을 위협하였음. 보민회 지부장 등은 위협을 두려워해 철도 연선 또는 일본으로 피난했음. 단속 및 그 밖에 대해서는 중국 측을 독려해 상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효과 없음.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당 영사관 경찰서로 하여금 순사 3명, 순보 1명에 중국순경 15명을 붙여 약 2주간의 예정으로 관할구역의 주요지를 소탕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여비 및 안내수당 900원을 지출했음.

---

1921년 7월 16일자 우치다 외무대신이 봉천 요시하라 총영사 대리에게 보낸 전보 요지

귀하의 전보, 통화현 팔도강 부근에서 활동하는 불령선인 단속을 위한 경관 파견에 관해 통화 본관에서 전보로 요청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국부적 조사반의 실행은 귀 지방 전체의 이익에서 보건대 효과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아카쓰카 총영사도 조만간 돌아올 테니, 본 건은 위와 같은 견지에서 동 총영사가 깊이 생각한 이후에 동 영사관에서 어떠한 요청을 하길 바란다.

-----

1921년 7월 19일 봉천 아카쓰카 총영사가 우치다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전보 요지

불령선인의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계획 중인데, 통화 방면의 소탕은 당분간 보류함.

-----

1921년 10월 20일자 봉천 아카쓰카 총영사가 우치다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요청 요지

### 조사반 파견 계획에 대한 건

본 건에 관해 먼저 조사반을 파견한 뒤, 관전, 환인 및 압록강 연안 지방에 불온한 기미가 있다. 각지에 불령선인이 출몰하여 양민들을 협박 살상하기에 선량한 조선인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결국 불온단체에 가담하는 자가 있다. 또한 그들은 기세가 올라 조선에 침입하려는 정황이 있다. 특히 태평양회의와 관련하여 불온한 무리의 선언에 따라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때이니만큼, 다시 조사반을 그 지방에 파견하여 불령선인 단속을 실행하는 것은 조선인들의 보호 및 민심의 안정상 큰 효과가 있다. 따라서 대개 지난번 같은 예에 따라 별지에 제시한 계획대로 실시한다. 또한 이번 조사반 파견에 관해서는 미리 장작린(張作霖)의 양해를 얻어 그의 묵인하에 이루어진다. 또한 각 현지사와 그 밖의 하급경찰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유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상 그다지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별지 -

### 조사반 계획서

1. 조사반은 일·중 공동작전의 형식을 취하고 장작린의 양해를 얻어 지방 관헌에게 훈령을 내리도록 함.

2. 반원은 모두 35명으로 하고 보민회원 15명, 중국순경 15명, 순사 4명(2명은 관동청 순사, 2명은 현재 보민회 감독을 하는 자), 경부 1명으로 함.
3. 조사 기간은 70일로 함.
4. 조사 지방은 아래와 같음.  
관전현, 환인현, 집안현, 임강현, 장백현, 통화현, 흥경현
5. 반원은 무기(권총)를 휴대하도록 함.
6. 실시 방법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불온한 자를 수색 체포하도록 노력하고, 이들을 귀순하도록 하거나 중국 관헌에게 맡겨 압송하도록 함.
7. 조사비용은 별지 예산서와 같음.

#### 조사반 비용 예산서

— 금 2만 4,655원 조사비 내역

금액	비목	적요
7,455	여비	보민회원 15명 70일분(1일 3원) 3,150 중국 순경 15명 70일분(1일 3원) 3,150 순사(일본인) 2명 70일분(1일 4원 50전) 630 경부 1명 70일분(1일 7원 50전) 525
3,750	준비금	보민회원 15명(1명 100) 1,500 순경 15명(1명 50) 750 순사 2명(1명 150) 300 경부 1명(1명 200) 200
2,100	조사비	1일 평균 30(70일분) 2,100
300	탄약	탄약 1500발 300
4,050	위로금	보민회원 15명(1명 200원) 3,000 순경 15명(1명 70원) 1,050
7,000	회유금	1현 평균 1,000(7현) 7,000
1,000	예비비	
2만 4,655	합계	



1921년 10월 27일 봉천 아카쓰카 총영사가 우치다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전보 요지

조사반 파견 건에 관해, 그 뒤 태평양회의와 관련해 불령선인의 활동이 각지에 나타나 현재 이를 막을 방책으로서 조선총독부로부터 1,000원의 보조를 받고 파견한 오가와(小川) 순사(조선총독부 파견 보민회 감독), 보민회 회장 이인수(李寅秀) 외 5명은 환인의 서쪽 약 2리의 지점에서 불령선인의 습격을 받아 생사를 알 수 없다. 이때 조사반의 파견은 절대 필요한 동시에 장작린의 양해도 성립함에 따라 눈에 띄지 않는 방법, 특히 중국 측 지방경찰을 원조하는 형식으로 불령선인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미리 제출한 예산액을 조속히 전송하길 바란다.

〈출전 : 調査班ノ行動ニ關スル件, 1921년 6월 10일, 『外務省警察史』 8, 不二出版 147~154쪽〉

## 17) 재만주 조선관계 영사관 회합회의 보고

### 1. 서언

조선과 만주는 영역이 서로 접해 있기에 교통과 경제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는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만주에 있는 조선인에 대한 본 총독부의 시설 여하는 곧바로 조선 통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보호 단속을 위해 본 총독부와 재만주 제국 영사관이 늘 서로 연락을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본 총독부와 재만주 영사관의 관계는 단순히 문서상의 왕복 또는 개개인 간의 회합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이번에 총독부 관계 관헌과 재만주 조선 관계 관헌이 한 자리에 모여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장래 총독부가 관계하는 사무 및 시설의 개선과 진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인정하여 사이트 조선총독은 이주인(伊集院) 외무대신의 승인을 얻어 재만주 조선 관계 영사를 초

청했다. 또 외무성 칙식사무국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 남만주철도회사 관계자들도 불러 1923년 11월 20일부터 3일간 경성부 정동 중추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조선 관계 재만주 영사관 회합회 일정

회의장소: 경성부 정동 중추원

일자	날짜	요일	시각	사항	비고
첫째 날	11월 20일	화	오전 10시~정오	총독, 정무총감 인사, 협의사항	
			정오		용산군사령관 초대
			오후 3시	부(府) 협의회 선거장 및 전매국 담배공장 참관	
			오후 6시 30분		총독관저 초대
둘째 날	11월 21일	수	오전 10~오후 2시	협의사항	
			오후 6시		조선은행, 만철, 동아척식, 미쓰이(三井)물산 관계자 초대
셋째 날	11월 22일	목	오전10~오후 2시	협의사항, 희망사항	
			오후 6시		정무총감 초대

## 3. 참석자

〈영사관 측〉

봉천 총영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
하얼빈 총영사	야마우치 시로(山内四郎)
간도 총영사	스즈키 요타로(鈴木要太郎)
안동 영사	니시자와 기조(四澤義徵)
길림 총영사 대리 영사	후카자와 스스무(深澤 暹)
요양 영사	야부노 요시미쓰(藪野義光)
광춘 영사	니시 하루히코(西 春彦)
정가둔 영사	요시하라 다이조(吉原大藏)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대리 부영사	군지 도모마로(郡司知磨)

통화 영사분관 주임  
 해룡 영사분관 주임  
 <외무성 측>  
 아시아 제3과장  
 촉탁  
 <관동청 측>  
 총무국장  
 탁산과장  
 <육군 관현>  
 조선군 참모장  
 조선 헌병사령관  
 관동 헌병대장  
 <만철 측>  
 이사  
 <조선총독부 측>  
 조선총독  
 정무총감  
 법무국장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검사장  
 잔산과장  
 학무국장  
 내무국장  
 체신국장  
 참사관  
 경무국장  
 의사과장  
 형사과장  
 고등경찰과장  
 경무과장  
 보안과장

아베 마사주로(阿部又重郎)  
 다나카 시게조(田中繁三)  
 쓰보우에 데이지(坪上貞二)  
 아이바 기요시(相場 清)  
 나카야마 사노스케(中山佐之助)  
 다나카 센키치(田中千吉)  
 아카이 하루미(赤井春海)  
 나스 다사부로(那須太三郎)  
 미네 유키마쓰(峯 幸松)  
 아카바네 가쓰미(赤羽克己)  
 사이토 마코토(齊藤 實)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  
 마쓰데라 다케오(松寺竹雄)  
 요코타 고로(横田五郎)  
 나카무라 다케조(中村竹藏)  
 니시무라 야스키치(西村保吉)  
 나가노 간(長野 幹)  
 오츠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우라하라 구시로(蒲原久四郎)  
 야나베 예자부로(矢鍋永三郎)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소노다 히로시(園田 寛)  
 후카자와 신이치로(深澤新一郎)  
 신조 유지로(新庄祐治郎)  
 구니토모 쇼켄(國友尙謙)  
 이시카와(石川登盛)

사무관	야마자키 마사오(山崎眞雄)
민사과장	미야모토 하지메(宮本 元)
사회과장	야지마 스키조(矢島杉造)
학무과장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평안북도 지사	이쿠다 세자부로(生田清三郎)
함경남도 지사	이규완(李圭完)

(중략)

[재만영사관회의 부록]

◎ 보민회의 경과

1919년 조선의 소요 이래 만주 각지에 독립단을 비롯한 그 밖의 불온단체들이 조직되어 양민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탈하고 있어서 각지의 조선인들은 제국공관에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당시 봉천(奉天) 총영사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위단을 조직하여 당국 및 중국의 관헌과 연락을 취하면서 거류 조선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복리를 증진하려는 취지하에 1920년 6월 만주 보민회를 조직하여 회칙을 인가했다.

보민회는 당초 본부를 흥경에 두어(후에 봉천으로 이전) 지부를 각지에 설치하고, 아울러 지방의 상황에 따라 지회를 만들었다. 지방별 직원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지방별	지위	성명
본부	고문 회장	최정규(崔晶圭) 이인수(李寅秀)
흥경현 지부	지부장 감독	백형린(白衡璘) 사사키 준(佐佐木準)
통화현 지부	지부장 감독	이동성(李東成) 나준 유키(奈順勇喜)
환인현 지부	지부장 감독	안홍익(安鴻翼) 모리 마사오(毛利正男)
관전현 지부	지부장	김용국(金用國)

임강현 지부	지부장 감독	손희상(孫熙相) 마쓰쿠마 칸타로(松隈堪太郎)
집안현 지부	지부장 감독	이완구(李完求) 이마나가 가오루(今永 薰)
장백현 지부	지부장 감독	주림(朱林) 기무라 도모하루(木村友治)
유하현 지부 유하현 북산성자 지회 유하현 양자초 지회 유하현 삼원포 지회	지부장 회장 회장 회장	이응두(李應斗) 이진하(李珍河) 박원호(朴元昊) 이동훈(李東熏)

보민회는 여전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21년 3월 최정규는 제우교(천도교) 교도 16명, 중국 순경 8명과 함께 집안현 폐왕조(霸王朝)에 가서 한족회 수령 박장호(朴長浩), 조맹선(趙孟善)에게 귀순을 종용하려다 충돌했고 다수의 인장 및 서류를 압수했다.

같은 해 4월 1일 최정규는 중국순경 2명의 지원을 받아 흥경 이도하(二道河)에 도착하여 대한독립복보사(大韓獨立復保社)의 도총장(都總長) 장기정(張基正)을 습격하여 소총 2개, 권총 1개 및 기타 다수의 책자를 압수하고 장기정을 체포하였다.

같은 해 5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봉천도독의 군사고문인 우에다(上田) 일행이 흥경, 유하, 해룡, 통화 그리고 5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봉천도독의 군사고문인 이타기(板木) 일행이 안동, 관전, 환인, 통화, 집안, 임강, 장백 등지에서 불령선인들을 수색했을 때 각지의 보민회는 일행을 안내해서 수색의 편의를 제공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타기(板木) 일행 체포자 277명

사살 8명

영사관 중국 측에 인도 57명

조선 측에 인도 5명

훈방조치 207명

우에다 일행 체포자 88명

사살 1명

훈방조치 87명

그 이후 불온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추었지만 보민회원들은 교만해져 종종 독립단 못지않은 부정행위를 일으켰다. 또한 내분도 끊이질 않기 때문에 일반 양민들도 점차 그들을 기피하게 되었다. 1922년 안동 영사관 내의 조선인회 및 철령(鐵嶺) 영사관 내의 조선인 농업조합을 보민회에 흡수시키려는 움직임에 각 영사관은 찬성했다.

이에 봉천 총영사는 1921년 9월 18일 각지의 보민회 간부 및 조선인 간부를 봉천에 불러들여 6일간 지방 상황을 보고받는 동시에 자문과 훈시를 했다. 그 내용은 보민회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무기 배치의 유무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문을 한 데서 보듯이 당시 보민회의 평판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뒤 보민회는 점차 조선인회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그중에는 본 총독부의 보조금을 받아 교육, 의료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이미 인심은 보민회를 떠났으니 조만간 해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근래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전부터 원한을 품고 있던 보민회를 습격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관전현 지부의 경우는 회원들 모두 조선으로 피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부활할 가망이 없다.

대세는 이미 보민회 폐지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이므로 1923년 9월 20일 봉천 총영사는 안동, 철령 영사와 회합을 갖고 보민회 폐지를 결의했다.

## 자치단체의 상황

### 안동

1913년 안동 조선인회를 설치해 각지에 지부를 두었지만, 그 후 안동 조선민회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본부 아래에는 총지부 3곳, 지부 27곳이 있다. 각지에서는 교육, 위생, 산업에 힘쓰고 있으며 성과도 양호한 상태다. 본 총독부의 보조 사업으로는 보통학교 1곳, 서당 5곳, 순회 진료소 3곳을 운영하고 있다.

### 봉천

1916년 일본인회에 조선인협회를 두었지만 내분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1920년 구제금 배분과 관련해 일반 조선인들의 신용을 잃어 결국 1922년 말에 해산했다. 본 총독부의 보조 사업으로는 보통학교 1곳, 순회 진료소 1곳을 운영하고 있다.

## 철령

전 조선인농업조합은 장우근(張宇根) 등의 노력으로 내용을 개선하는 동시에 1921년 조선인회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교육, 산업, 위생에 힘을 쏟고 있다. 본 총독부의 보조 사업으로는 보통학교 1곳, 순회 진료소 1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래에 언급한 조선인회는 모두 본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교육, 위생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다.

무순, 정가든, 신민부, 장춘, 길림, 하얼빈, 일면파, 해림, 해룡, 도록, 남산성자(이상 조선인회)

홍경, 통화, 양료초(洋了哨), 소산성자(이상 보민회)

## 간도

전 간도에는 거류민회 또는 공민회 등의 명의로 여러 곳에 조선인 단체가 있었으나 1917년 이래 총영사관은 모든 단체들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조선인회로 통일했다.

총영사관 내 용정촌, 백자구, 천보산, 대랍자, 남양평, 동불사

국자가 분관 관내 두도하, 이도순, 부동

훈춘 분관 관내 두도순, 흑항자

1922년 2월 이래 각 민회에 금융부를 설치했다.

1922년 4월 이래 수역 예방 사무를 개시했다.

### ◎ 1922년도 재외 조선인에 대한 시설비

관(款)	항	명목	금액	산출 내역	증감 내역 액
재외 조선인에 대한 시설비			618,072		
	재외 조선인에 대한 시설비		618,072		

		주임 봉급 판임 봉급	4,844 13,998	사무관 1명(浦潮) 축탁 8명, 각 1,656원 포조 2명, 하얼빈 1명, 길림 1명, 봉천 1명, 안동 1명, 간도 2명 축탁 1명(포조)	13,248  750
		시설비	68,118	청비(廳費) 보통 청비 9명, 각 240원 청비 특별 청비	2,760 2,160 120 480
		여비	36,000	출장 파견 주임 1명 판임 7명, 각 2,400원	10,800 25,200 4,800 16,800
		통역 수당 숙박료	4,500 2,088	판임 2명, 각 1,800원 주임 1명 판임 8명, 각 216원	3,600 360 1,728

〈출전 : 朝鮮總督府, 在滿洲韓鮮關係領事館打合會議報告, 1923년 11월, 『朝鮮統治史料』 8, 567~571, 864~869쪽〉

## 18) 보민회 본부 임원 연말 상여에 관한 건

기밀(機密) 제168호

1923년 12월 20일

봉천 총영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

외무대신 남작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 보민회 본부 임원 연말 상여에 관한 건

보민회 본부 임원 연말 위로금에 관해 작년 말 본 회의 경상비 예산 조위비(弔慰費)



목적으로 이를 지급했고, 봉급액과 성적 등을 고려해서 각각 급여한 바, 보민회 회장 대리 최정규가 별지에 있는 바와 같이 연말 상여금 지급을 요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비용 사용처를 물었더니 아래와 같이 배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에 보민회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예산 가운데 이에 관한 아무런 비용항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상비 중 흥경(興京) 지부 감독관 여비 2,400원을 흥경 지부에만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지부에 대해 불공평한 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영사관에 보류해둔 것 중에 제1기분 600원은 올해 6월 동 지부 임원을 퇴직시켰을 때 이를 퇴직수당 및 6월까지의 보통수당으로 충당하여 지불했고 잔액에 대해서는 1921년 중 흥경에 본부를 설치했을 때 경비부족으로 인해 민간으로부터 들여온 차입금의 반환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잉여금은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연말 상여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관례도 있고 해서 이를 곧바로 거부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사정을 상세히 알리는 바, 검토하신 후 부디 조속히 지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정규가 신청한 연말 상여금 및 내역

금 1,000원 총액

내역

금 500원 고문 최정규

금 100원 전 부회장 장지량의 빈곤 구휼금

금 100원 전 고문 김유영의 빈곤 구휼금

금 150원 회원 가운데 공로자 3명에 대한 구휼금(김은성, 엄주익, 이능만)

금 150원 현 서기, 조사원, 소사 등의 상여금

- 참고 -

#### 작년 말 상여 금액 및 내역

- 금 610원 총액

내역

금 300원 고문 최정규

금 310원 부회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 조사원 3명, 소사 1명

아울러 최정규에 대해서는 여비 항목에서 금 100원, 기밀 항목에서 금 200원, 합계 600원을 지급했음.

1923년 12월 18일  
만주 보민회장 대리 최정규  
후나쓰 총영사 각하

### 본부 임원에 대해 연말 상여금 지급에 관한 신청

위 건에 관해 기밀비 및 교제비의 잔액으로 연말 상여금을 충당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그러한 명목의 금액이 없음에 따라 감독 여비 잔액 가운데 금 1,000원으로 이번 연도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려 하니 허가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하는 바입니다.

〈출전 : 保民會本部役員年未賞與二關スル件, 1923년 12월 20일,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2,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19) 만주 보민회 폐지 및 선후 조치에 관한 건

아삼기밀합(亞三機密合) 제27호  
1924년 1월 29일  
수신 : 봉천, 안동, 철령, 통화, 해룡, 총영사, 영사분관주임 전(殿)  
발신 : 마쓰이(松井) 대신, 별지는 봉화에만  
건명 : 만주 보민회 폐지 및 선후 조치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9월 22일자 봉천발(發) 기밀 제90호, 10월 1일자 철령발 기밀 제58호, 10월 24일자 안동발 기밀 제97호에서 각각 품청한 취지에 따라, 보민회의 폐지는 사정상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대체적으로 봉천 안(案)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별도 기재한 각 항에 기초하여 봉천 총영사가 관계 공관과 논의한 후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여 다시 품청해 주십시오. 또한 봉천 안 제3항, 즉 순시반 파견안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본 외무성의 의향으로는 위 잔여금은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동 회 폐지 후에 종래 동 회의 공로자와 관계자를 소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구제함으로써 수년간 제국에 의지한 만주 거주 일부 조선인의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순시반 파견안은 유감스럽게도 승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경찰관의 출장 순시를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본 건과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회 폐지에 관해 봉천 거주 조선인 중에 별지(별지는 봉천에만 송부)에 첨부한 바와 같이, 본 외무성에 청원서 및 변명서를 우편으로 보낸 자가 있습니다. 과거 조선 병합 당시 일진회를 비롯한 그 밖의 단체 해산에 있어 소위 해산금(解散金)이라는 것을 조선총독부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필경 이를 모방하여 이용하려는 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동 회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둬으로써 후일 어떠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하길 바랍니다.

통화에 추신)

작년 12월 16일자 기밀공 제78호에서 청구한 건은 참고로 봉천 총영사에게 사본을 송부.

- 다음 -

제1. 보민회 폐지에 관해서는 봉천 안 제1항 전단(前段)을 승인하는 데 있어 봉천 총영사가 결행하도록 한다.

제2. 봉천 안 제2항의 보민회 임원 퇴직수당 지급의 건을 승인하고, 또한 본부 및 각 지부를 통해 각자에게 그 기간에 한해 공적 및 금액 사정서(査定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위 수당은 1923년도 배포 예산의 총액(본 외무성 유보(留保) 잔여금을 제외)으로 이를 충당하도록 하는데, 봉천 안 제4항 등의 관계상 만일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본 외무성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관계 공관과 협의를 거쳐 위 예산 총액은 본부와 지부 공통으로 안배해도 무방하다.

또한 증빙서류 등 회계상 필요한 서류는 동 회를 폐지하기 전에 완비하도록 배려

할 것.

제3. 동 회의 1923년도 보조비 가운데 본 외무성이 유보한 1만 3,780엔(유보금은 15,300엔이지만, 관전현(寬甸縣) 지부 조난 폐쇄로 인한 구제를 위해 920엔 및 연말 상여금 600엔, 합계 1,520엔 지출 완료)은 여기에 1921년도 동 회 보조비로 지출하였고, 토지 경영비(5,435엔), 현재 금액을 합쳐 폐지 후 동 회의 관계자 보호 구제의 목적을 위해 주로 이들 관계자로 하여금 적당한 장소에 가급적 농회(農會) 같은 단체를 조직하도록 해 그 기본금으로서 이를 보조 지급할 것.

\* 주 : 재외 조선인에 대한 시설 가운데 이른바 보호 무육(撫育), 즉 조장 방면 사항은 조선 총독부에서 설치하기로 하고 외무성에 관한 한, 단속의 견지에 입각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따라 폐지 후의 보민회원 구제사업도 단속 및 회유의 필요상 우리 관현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 지방에 규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계획할 필요가 있음.

제4. 위 항목의 경리 방법에는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하라. 아울러 앞서 언급한 1921년도 보조에 관한 토지 경영 상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본 외무성에 아무런 보고가 없으니 이번에 이 항의 구체적인 안과 함께 그 상황 및 수지 결산서를 올리도록 하라.

제5. 앞 항목의 보호 구제사업에 대해서는 1924년도에도 사업의 성적 여하에 따라 본 외무성에서 보조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니, 앞 항목의 계획에서는 이런 점을 포함하고 고려하길 바란다.

제6. 종래 보민회가 보유한 무기 등이 있다면 폐지 전에 거두어들여 가까운 공관 또는 경찰관 파주소(派駐所)에 보관할 것.

제7. 통화 분관 및 각지 경찰관 파주소에 있으면서 종래 보민회의 이름으로 교육, 의료 등을 실시해온 자가 있다. 그러나 동 회의 폐지와 더불어 그 경영 주체를 잃어 여러 불편이 있을 테니, 해당 장소에는 봉천 안 제1항 후단의 단체를 새로이 조직하여 그 사업을 이어받게 하든가 또는 그 지역에 일본인 거류민회 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이어받는 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계승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의 필요가 있다면 본 외무성에서 타 지방 조선인 민회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조건의 보조를 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봉천 총영사가 관계 공관과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여 본 외무성에서 보조액을 검토받도록 하라. 물론 분관 소재지는 별도로 하고, 우리 경찰관 파주소가 있는 곳은 (1) 실제상 조선인회 설립 효과가 있

고, (2)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보호 감독이 미치며, (3) 중국 측과의 관계에서 장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 보조의 조선인 단체의 설립을 인정할 수 있다. 오지에 대한 보조와 그 밖의 시설은 종래 과거의 실험을 돌이켜 보건대 당분간 자체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도록 하라.

제8. 보민회를 폐지한 결과 자연히 오지의 정황에 대한 첩보 기관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에 각 공관 감독하에 적당한 첩보자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실시에 관해서는 각지에 확일적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울지라도 가능한 한 토착민에게 첩보를 위촉하는 방법을 취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시시각각 순시하여 첩보자의 감독 및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직업적 첩보자의 특파는 가급적 피하도록 할 것.

본 항목은 이를 검토하고 계획하는 등 시일을 요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보민회의 폐지와 동시에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조사한 뒤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라.

제9. 보민회의 폐지 후 이를 대신할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보조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므로 그 선후책(善後策)으로는 동 회의 폐지와 동시에 제3항 및 제7항에 기재된 단체를 조직하고(보조의 실시는 예산의 관계상 1924년도부터), 본 외무성은 1924년도에도 1923년도와 마찬가지로 '재외국 거류민 보호단속비'의 사무비 조항 '보민회 및 농회보조'의 항목에서 금 9만 2,472엔을 계산하여 예산 성립이 된다면 위의 보민회의 폐지 건도 자연히 예산에 여유가 생기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3항의 (주)를 고려하면서 조선 측 시설과 주의(主義)에 있어 모순되지 않는 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7항의 단체 외에도 각지의 기존 조선인 민회 등에 대한 보조도 지금부터 충분히 강구하도록 하라.

이상

본신 발송처 : 봉천, 안동, 철령, 통화, 해룡  
(별지는 김유영 등이 외무대신에게 보낸 '청산서' 및 김은성 등이 아시아국에 보낸 '변명서'를 첨부한 것임)

〈출전 : 滿洲保民會廢止並善後措置ニ關スル件, 1924년 1월 29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 20)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공적조사에 관한 건

[20-1]

기밀공(機密公) 제61호

1924년 3월 4일

봉천 총영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

###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공적조사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별지 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주 보민회 본부 회장 대리 고문 최정규로부터 공로자의 공적조사서를 제출받고 이에 송부합니다. 귀 관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공로자 개인별 의견을 첨부해 조속히 통지하여 보고하길 바랍니다.

본신 송부처 : 철령, 안동 영사, 동화, 해룡 분관 주임, 사본 외무대신

### 만주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조서

이름	회무(會務) 관계 연월	관계 개소	공적 사항	비고
김유영 (金裕泳)	1922년 11월 ~1923년 3월	홍경지부회 고문	1919년 조선독립만세 소요사건 발생 이래 반대론자로서 만주 각 배일파에 대해 경고문을 뿌렸고, 이에 따라 그들로부터 반감을 산 자로, 본 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진력했다. 그리고 본 회 임원 감축과 더불어 퇴직한 공적이 있음.	원래 제우교 대도주로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임.
이인수 (李寅秀)	1920년 5월 ~1922년 10월	본부 총회장	본 회 창립 발기인으로 1921년 10월 배일파 귀순책으로서 선전대를 조직하였다가 홍경현 영능가(永陵街)에서 배일파의 습격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그 뒤 조선으로 돌아가 배일선전을 한 탓	원래 제우교 도사(道師)를 역임한 적이 있음.

			에 면직되었음. 그러나 창립 당시 그 공적이 적지 않음.	
장지량 (張之亮)	1920년 6월 ~1923년 3월	본 회 회보 주필동, 부총재 동, 부회장	일찍이 구한국정부 시절 고관직에 있었던 자로서 한학 수양이 풍부하여 본 회에 들어온 이래 각 방면에서 인심을 모으는 일에 전념, 직간접적으로 정부를 위한 공적이 적지 않은 인물임.	제우교 도사
최병기 (崔柄基)	1920년 5월 ~같은 해 8월	본부 총무	본 회 창립 발기인으로 진력했고, 특히 창립비도 대신 제공함.	
오헌영 (吳憲泳)	1921년 6월 ~같은 해 8월	환인지부 회장	본 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창립비를 대신 제공함. 본 회를 사직한 후 1922년 3월 환인현 칠도구(七道溝)에서 불온한 무리에게 암살당함. 당시 육군 대위 히로마(廣間)씨의 밀정으로 종사한 적이 있음. 따라서 현재 그 유족에 대해 부조금 형태로 상을 줄 필요가 있음.	
표성천 (表聲天)	1920년 3월 ~같은 해 6월	본부 간사	본 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창립비를 대신 제공한 공적이 있음.	
엄주익 (嚴柱翊)	1920년 9월 ~1923년 4월	본부 조사원 관전, 환인지부 회장	본 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진력했고, 1920년 3월에 본부 최 총회장과 함께 집안현 패왕조(霸王槽) 독립단 중앙 소탕 당시 동행하여 무기 등을 압수함. 그 뒤 본부 조사원으로서 여러 위험지역에 출장, 군대 출동 당시에도 동행함. 재직 중에 그의 소유 가옥이 불타기도 해서 그 공적이 적지 않음.	제우교 전도사
김은성 (金殷盛)	1920년 3월 ~1921년 12월	홍경지부 부회장, 본부 총무, 홍경지부 회장	본 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본부의 최 총회장과 함께 1920년 3월 집안현 패왕 조 독립단 중앙 소탕 당시 동행. 우에다(上田) 고문과 함께 여러 위험지역을 순회함. 군대 출동 당시에도 동행했고, 관전 지방에서는 불온한 무리로부터 왼쪽 팔에 총상을 입는 등 그 공적이 적지 않음.	

이정근 (李貞根)	1920년 3월 ~1922년 3월	본부 간사 조사계 주임 서기	본부 창립 발기인으로 진력했고, 1920년 3월 최 총회장과 함께 집안현 독립단 중앙을 소탕, 같은 해 4월 영능가의 독립단 총장 장복재(張福齋)의 사무실을 소탕하며 무기를 압수, 홍묘자의 독립단을 소탕, 또한 왕청문 독립단을 소탕하며 불온 문서를 다량 압수, 삼원포 독립단 소탕 당시에 사용중이던 독립신문 인쇄기를 전부 압수함.
박원식 (朴元植)	1920년 7월 ~현직	홍경지부 간사, 본부 조사원	1920년 7월 관전현 대아하(大雅河) 독립단, 홍묘자, 왕청문 독립단 소탕 당시에 최 총회장과 함께 진격한 자로, 군대 출동, 시미즈(清水) 경부 출장 당시에 동행하여 각 위험지역에도 수차례 들어가는 등 그 공적이 적지 않음. 그리고 현재 현직에 진력하고 있음.
박시화 (朴時和)	1920년 10월 ~1923년 6월	본부 조사원 홍경지부 조사원	군대 출동 당시 동행하며 각 위험지역에 들어가 불온한 문서와 무기를 압수하는 등 그 공로가 적지 않음.
이완구 (李完求)	1922년 9월 ~현직	집안지부 회장	집안지부 조선인회 회장으로 본회를 위해 진력했고, 불온한 무리로부터 자식 둘이 살해당했으나 여전히 현직에 진력하며 성적을 올리고 있음.
김용국 (金用國)	1922년 9월 ~1923년 8월	관전지부 회장	관전지부 조선인회 회장으로 관전지부 회장으로 부친은 불온한 무리에게 살해당하는 동시에 주택도 불에 타버리는 등 그 공적이 적지 않음.
이동성 (李東成)	1920년 5월 ~현직	통화지부 회장	취임 이래 아무런 지장 없이 충실히 임하고 있음. 민심 파악에 노력하면서 각 방면에 걸쳐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백형린 (白衡璘)	1920년 3월 ~1924년 1월	홍경지부 회장	1921년 10월에 불온한 무리에게 부친이 살해당함. 그러나 여전히 현직을 충실히 수행함.	
최봉만 (崔奉滿)	1920년 10월 ~1923년 4월	본부 조사원	군대 출동 당시와 최 고문의 홍묘자 독립단 소탕 당시 동행. 각 위험지역에 들어갔고, 시미즈 경부 순회 당시 동행함.	
박봉순 (朴逢舜)	1920년 3월 ~1921년 6월	환인지부 간사	본 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최 총회장과 집안현 패왕조 독립단 중앙소탕 때와 우에다(上田) 고문 순회 당시 동행한 자임. 그리고 이들 지역의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각 위험지역을 돌아다님.	
강경해 (姜鏡海)	1920년 5월 ~1923년 3월	홍경지부 서기, 관인지부 부회장	1921년 9월에 선전대에 가담해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재직 중의 공적이 적지 않음.	
이태인 (李泰仁)	1920년 10월 ~1923년 8월	본부 조사원, 환인지부 조사원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지리에도 밝아 최 총회장의 관전현 대아하 독립단 소탕 때와 군대 출동 당시 동행. 또한 각 위험지역에 들어감. 그리고 시미즈 경부와 동행하며 각지를 순회한 적이 있음.	
문국빈 (文國彬)	1920년 10월 ~1923년 7월	본부 조사원, 임강지부 조사원	군대 출동과 최 고문의 관전현 대아하 독립단 소탕 당시 동행. 또한 그의 형은 불온한 무리에게 살해당함.	
박필근 (朴弼根)	1920년 3월 ~1922년 12월	홍경지부 조사원, 환인지부 조사원, 홍경현 홍동(興東) 지회장, 본부 임시 조사원	최 고문이 홍묘자, 왕청문, 대아하 등 각지 독립단 소탕 당시 동행한 자로, 1921년 10월경 그의 매형 부부가 독립단에게 살해당하는 등 그 공적이 적지 않음. 또한 시미즈 경부 순회 당시 동행함.	

안기초 (安基礎)	1920년 8월 ~1922년 4월	본부 총무, 부회장, 환인지부 고문	일반인들의 민심 파악에 진력함.	
이응도 (李應道)	1920년 5월 ~1922년 3월	흥동(興東) 지부장	각 위험지역에 출장을 가서 기밀 조사에 종사함.	
길창실 (吉昌實)	1921년 2월 ~1922년 10월	환인지부 조사원	최 고문이 관전현 대아하 독립단 소탕 당시 동행함.	
이지선 (李枝善)	1921년 6월 ~1922년 11월	본부 임시 조사원	각 위험지역에 출장을 갔고, 그의 부친과 남동생이 불온한 무리에게 살해당함.	
황하숙 (黃河淑)	1921년 9월 ~1922년 5월	환인현 환서(桓西)지 회장	1921년 12월 중에 환동(桓東) 횡도 천(橫道川)에 출장을 가서 불온한 무리로 인해 오른쪽 손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재직 중에는 각 위 험지역에 출장.	
이석기 (李碩基)	1921년 5월 ~같은 해 12월	환북(桓北)지 회 조사원, 환서(桓西)지 회 조사원	각 위험지역에 출장하였고, 특히 남동생은 최 총회장과 함께 패왕조 (霸王槽) 독립단 소탕에 진력한 자 로, 불온한 무리들에게 살해당함.	
정승복 (鄭承福)	1920년 7월 ~1922년 3월	본부 조사원, 흥남(興南) 지회장	최 총회장과 함께 흥경현 흥묘자, 관전현 대아하 독립단 소탕 당시 진력했고, 군대 출동에 동행함.	
장영준 (張英俊)	1920년 10월 ~1922년 4월	본부 임시 조사원	군대 출동 당시 유하현 삼원포 독 립단이 사용한 독립신문 인쇄기를 압수할 때와 시미즈 경부 순회 당 시에도 동행함.	
안홍익 (安鴻翼)	1920년 4월 ~1922년 9월	본부 간사, 흥경지부 부회장, 환인지부 회장	본 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진력했고, 재직 중 사고 없이 성적을 올림.	
김경환 (金景煥)	1921년 1월 ~1923년 7월	관전현 관북(寬北) 지회장	재직 중 부친, 남동생, 자식 모두 불온한 무리들에게 살해당함.	
차강 (車綱)	1921년 10월 ~1922년 5월	집안지부 회장	안동 영사관, 관할이 달라 사직함.	

홍대영 (洪大英)	1921년 10월 ~1923년 4월	홍경지부 부회장	불온사상 반성에 노력함.	
최승일 (崔承一)	1920년 9월 ~1921년 4월	본부 조사원	군대 출동 당시 동행하며 여러 위험지역에 출장함.	
박봉수 (朴鳳洙)	1920년 3월 ~1921년 5월	환인지부 조사원	최 총회장과 함께 집안현 패왕조 독립단을 소탕함.	
김경준 (金璟俊)	1920년 3월 ~1922년 5월	본부 서기	최 총회장과 함께 패왕조, 영능가, 왕청문 독립단을 소탕함.	
김성만 (金成滿)	1922년 6월 ~같은 해 8월	본부 조사원	우에다 고문과 동행, 최 총회장과 함께 홍묘자 독립단을 소탕함.	
김도성 (金道盛)	1921년 5월 ~1923년 11월	본부 통신계원, 신빈보 분회장, 환인지부 조사원, 동 학교교원	위험지역에 들어가 기밀 통신을 위해 진력함.	
강병철 (姜炳哲)	1920년 6월 ~1921년 3월	홍경지부 조사원	군대 출동 당시 동행하여 여러 위험지역에 출장함.	
김영순 (金永淳)	1920년 6월 ~1923년 4월	홍경지부 회계원	본 회의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 노력함.	
유진행 (俞鎭行)	1921년 7월 ~1922년 8월	환인현지부 조사원	불온한 무리들로부터 무기 9정, 기관총 2정, 콜트 1정을 압수하여 영사 분관에 납부. 또한 시미즈 경부와 동행함.	
이지태 (李枝泰)	1922년 4월 ~같은 해 12월	환인지부 조사원	각 위험지역에 들어갔고, 부친과 남동생은 불온한 무리들에게 살해당함.	
오정근 (吳貞根)	1921년 6월 ~1922년 11월	본부 조사원	각 위험지역에 출장을 갔고, 불온한 무리로 인해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당함.	
길은초 (吉隱初)	1920년 5월 ~같은 해 8월	환인지회 간사	열심히 시무 중, 남동생이 환인 지회장으로, 근무 중 불온한 무리들에게 살해당함.	
김영태 (金榮泰)	1920년 9월 ~1923년 3월	홍경현 홍남 지회장, 본부 서기	재직 중 위험지역에 들어가 열심히 시무한 자임.	

손희상 (孫熙相)	1921년 10월 ~1924년 2월	임강지부 회장	열심히 시무하고 있으며 현재도 근무 중임.	
길은찬 (吉隱贊)	1920년 3월 ~1924년 12월		본 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집안현 독립단 소탕에 동행하는 등 위험 지역에 들어가 본 회와 긴밀한 연 락을 취함.	
서상순 (徐相淳)	동상(同上)		동상(同上)	
정재곤 (鄭在坤)	동상		동상	
한명재 (韓明哉)	동상		동상	
하영준 (河永俊)	동상		동상	
장봉진 (張鳳振)	동상		동상	
차승준 (車承俊)	동상		동상	
박성호 (朴成浩)	동상		동상	
황용운 (黃龍雲)	동상		동상	
강전 (姜佺)	동상		동상	
김천을 (金天乙)	1920년 9월 ~1921년 7월	본부 총무	군대 출동 당시 동행함.	
정봉록 (鄭鳳綠)	1920년 5월 ~1923년 12월	환인지부 조사원, 홍경지부 조사원	위험지역에 가서 기밀 연락에 중 사함.	
김세찬 (金世贊)	1921년 6월 ~같은 해 12월	본부 조사원, 홍경 분회장	각지에 모험적 출장을 감.	
김창해 (金昌海)	1920년 5월 ~1922년 4월	환인지부 조사원, 본부 간사	군대 출동 당시 동행함.	

김희정 (金熙貞)	1922년 3월 ~1924년 2월	홍동지회 서기. 홍경지부 조사원	1922년 6~7월까지 불온한 무리에 게 납치되었으나 무사 귀환함.	
주성삼 (周省三)	1921년 6월 ~1923년 2월	환인지부 임시 조사원	중국인으로 조선 사정에 정통하고 각 방면에서 기밀을 위해 이용함.	
이해수 (李海秀)	1922년 2월 ~1923년 3월	본부 간사		
김주익 (金周益)	1922년 5월 ~1923년 4월	본부 서기		
계영환 (桂英煥)	1922년 4월 ~1923년 3월	본부 조사원		
임기권 (林基權)	1921년 12월 ~1922년 2월	통화지부 조사원	시미즈 경부 순회 당시 동행했음.	
전경호 (全璟鎬)	1922년 4월 ~1923년 7월	집안지부 서기		
이문약 (李文若)	1920년 8월 ~1922년 2월	통화지부 서기		
허윤 (許鎰)	1921년 11월 1922년 3월	홍경지부 간사		
송운봉 (宋雲峰)	1921년 5월 ~1923년 1월	환인지부 서기		
최일룡 (崔日龍)	1920년 7월 ~1922년 7월	관전현 파견 집안지부 조사원		
정병한 (鄭陟翰)	1921년 10월 ~1922년 8월	유하지부 부회장, 서기		
김동익 (金東翼)	1921년 10월 ~1923년 2월	본부 서기		
백영모 (白永模)	1921년 9월 ~1922년 3월	환인지부 조사원		
이능만 (李能滿)	1921년 10월 ~1922년 3월	환인지부 임시 조사원	시미즈 경부의 순회 당시 동행했 음.	
김갑수 (金甲秀)	1921년 5월 ~1923년 1월	환인현 환남(桓南) 지회 조사원	1921년 12월 마권자(馬圈子)에 출 장, 불온한 무리로 인해 손에 상처 를 입음.	

김석지 (金錫祉)	1922년 5월 ~1922년 12월	환인현 환남(桓北)지 회장		
김응호 (金應浩)	1922년 4월 ~1923년 7월	집안현 집남(輯南) 지회장		
조운걸 (趙允杰)	1922년 4월 ~1923년 7월	집안지부 조사원		
최덕빈 (崔德斌)	1920년 6월 ~1923년 1월	흥북(興北) 지회장		
김홍주 (金洪疇)	1921년 10월 ~1922년 12월	본부 서기, 흥동(興東) 지회장		
김덕여 (金德汝)	1921년 1월 ~1922년 3월	흥서(興西) 지회장		
김형삼 (金亨三)	1922년 2월 ~1923년 8월	통화지부 조사원		
이동기 (李東起)	1922년 2월 ~1923년 2월	흥경지부 간사, 동 학교 교사		
최경도 (崔景道)	1920년 8월 ~1921년 11월	흥경지부 동창남 분회장		
박원도 (朴元道)	1921년 12월 ~1922년 12월	관전지부 간사, 환북(桓北) 지회		

〈출전 : 保民會功勞者及關係者功績調二關スル件, 1924년 3월 5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20-2]

기밀(機密) 제20호

1924년 3월 12일

안동 영사 니시자와 기조(西澤義徵)

외무대신 남작 마쓰이 게이시로(松井慶四郎) 전(殿)

1924년 3월 11일자 기봉령(機奉領) 제12호 후나쓰 총영사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을 송부합니다.

건명 :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공적조사에 관한 건

기봉령 제12호

1924년 3월 11일

안동 영사 니시자와 기조(西澤義徵)

봉천 총영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 전(殿)

###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공적조사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이달 4일자 기밀령 제11호에서 조회를 마친 최 회장 대리가 제출한 공적조사 가운데 당 영사관 내의 관계자에 대해, 별지 갑호(甲號)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조사서의 내용에 대해 보면 오로지 보민회 직계에 속하는 자를 우대하는 듯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백 지부 같은 곳은 완전히 도외시되어 있는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 지시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 영사관 내의 보민회 임원에 대한 당 영사관의 공적조서는 별지 을(乙)호에서 밝힌 바와 같으니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며 답신을 올리겠습니다.

추신)

집안지부에서는 아직 회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일 연락을 하겠습니다.

본 서신의 사본 송부처 : 외무대신, 철령 영사, 통화, 해룡 분관 주임

갑호

성명	공적 사항
엄주익 (嚴柱翊)	관전 지부 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관전 지부 회장을 명한 일이 없다. 본부에서 그를 회장으로 하고 김용국(金用國)을 부회장으로 했다. 당시 김용국은 사적인 서신으로 통지를 해왔지만, 당 영사관에서는 승인하지 않았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했다(1922년 4월 18일 봉령[奉領] 제14호 참고).
강경해 (姜鏡海)	관전 지부 부회장으로 있었으나 재직 중 사적인 여행을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는 일이 많았다. 다만 교육에 관해서는 상당한 공헌이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부상에 관한 일은 당 영사관에서 판명되지 않았다.
문국빈 (文國彬)	1922년 4월 1일 임강 지부 조사원에 임명되었으나 그 뒤 사직하였다. 재직 중 별다른 공적 없다.
김경환 (金景煥)	1922년 4월 1일 관전 보민회 간사에 임명되어 같은 해 11월 31일 관서(寬西)지회장에 임명되었다. 재직 중 가족이 살해된 것은 사실이고, 회장을 도와 회부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을 인정한다. 동 지부는 1923년 7월 2일 조선인 마적의 습격을 당해 결국 지부와 지회 모두 병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김용국 등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해 220엔, 임원 위로금으로 60엔, 합계 280엔을 전달한 자이다.
차강 (車綱)	봉천 총영사관 시미즈 경부가 이끄는 조사반에 참가했고, 집안에서 임의로 그 지역 지부 회장이 되겠다며 보민회 지부를 설립하려 했으나 종래의 조선인회 지부 관계자와 알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 영사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다. 또한 항상 강 건너편 조선 땅에 있으면서 직접 보민회 본부와 타협하려 했으나 결국 유명무실한 것으로 끝나고, 1922년 4월경 봉천으로 돌아온 자이다.
손희상 (孫熙相)	1922년 4월 1일 임강 지부 회장이 된 이후 지금에 이르렀다. 그간의 상당한 공적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별히 현저한 사실로서 추천할 만한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강 건너편 중강진에 체류하고 거의 중국 땅에는 거주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관헌이 보민회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데에 기인하지만, 서류 조선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으로 인정된다.
김경호 (金璟鎬)	1922년 4월~1923년 7월까지 집안 지부 서기로 있었지만, 사임한 뒤에는 관동청(關東廳) 순포(巡捕)로 임명되어 현재 도구 주재소에 근무하고 있다.
김응호 (金應浩)	1919년 4월부터 조선인회 집안 총지부 총화보 지부장이 되었으나 보민회 지부 설치와 더불어 집남 지회장에 임용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조윤걸 (趙允傑)	집안 지부 조사원이라 하지만, 동 지부에 해당 인물은 없다. 조윤걸(趙允傑)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 사람이라 한다면 통화 보민회 지부 조사원에서 현재 집 조사원이 되었다.
박원도 (朴元道)	관전 지부 간사라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다.
이완구 (李完求)	본인이 집안현에 거주한 것은 20여 년 전의 일로, 당시 한국정부로부터 부향약장(副鄕約長)을 겸임하라는 명을 받은 자이다. 그 이후 1907년 간도문제의 해결과 함께 1909년 향약을 폐지했지만, 늘 집안현 도구에 거주하면서 이주 조선인들을



	<p>좌지우지했다. 조선인과 중국인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명성이 자자했다. 1916년 7월 조선인회 집안 총지부가 설치되자 선출되어 총지부장이 되었다. 관내 11곳 지부를 총괄하며 훌륭하게 우리 시정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호구조사를 완료하고 통계의 기초를 만드는 등 평가할 만한 공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1919년 3월 조선 내의 독립소요 사건의 영향이 만주 각지에 파급되어 종래의 낙도가 완전히 바뀌어 불령선인의 발호지가 되면서, 친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시종 그들의 목표가 되었고, 각 지부 역시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게 되었다. 모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조선인회도 근거에서 흔들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하지 않고 주재 경찰관의 보호하에 자위책을 강구하며 불온한 무리들의 체포에 종사하는 등, 매우 헌신적인 태도로 회무에 힘을 쏟고 있다. 때로는 신변의 위협을 우려해 강 건너편 미타, 혹은 만포진으로 피난하는 일이 있으나, 당시의 정세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민회 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라 할지라도 시종일관 이를 유지 노력했으나 예전처럼 활동할 수 없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중 불령선인에게 살해 혹은 납치된 자는 다음과 같다.</p> <p>1922년 5월 25일 차남 이희형(李喜亨, 28세), 납치, 생사불명.  동 9월 26일 삼남 이희패(李喜貝, 24세), 도구 서문외에서 총살.  동 11월 5일 장남 이희원(李喜元, 37세), 납치, 생사불명.  동 11월 24일 조카 이용규(李容奎, 38세), 납치</p> <p>이상과 같이 그의 친아들 3명 중 1명은 총살, 2명은 납치 후 생사불명(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 후 살해된 것으로 보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심정은 참으로 연민을 금할 수 없다. 당국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로할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 부신했지만, 끝내 실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 그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양으로, 기회를 때마다 공동 토벌을 제의하고 있는데 그 심중을 살펴보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p> <p>이와 같이 그가 성심과 성의를 다해 이주 조선인들을 위해 노력한 공적은 위대한 것으로, 아마 달리 그 예를 찾아볼 수 정도이다.</p> <p>그러나 근래 건강을 해쳐 기세를 올리지 못하니 참으로 동정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의사의 진찰에 따르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기회에 충분한 위로를 바라는 바이다.</p>
<p>김용국 (金用國)</p>	<p>1920년 8월 □□선인회□□□에서 금 6엔의 상여가 있었다. 1920년 5월 회장 김돈(金燾)의 사직과 함께 지부장 대리가 되었고, 이어서 같은 해 8월 총지부장에 취임하여 회무의 발전에 전념했다. 그러나 지부 소재지인 관전현 태평초(太平哨)는 교통이 불편하여 강가에서 12리나 떨어진 곳으로, 종래부터 아무런 보호기관의 설치가 없었고, 한상 불안한 생각에 쫓기면서 회무를 보는 상태여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인 마적의 박해가 끊이질 않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조선인들의 보호에 힘쓴 공적은 그의 강건하고 용감한 성격에 따른</p>

	<p>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민회 지부가 설치되자 그 회장으로서는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수집해 통신했다. 또한 태평초 이주자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낙영학교(樂英學敎, 1922년 11월 28일 개교)를 설립해 서당교육을 실시하고 착실히 발전시키는 등의 공적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1923년 7월 2일 조선인 마적 30여 명이 태평초를 습격해 사무소 및 민가에 방화하자 거주자 18가구 120명은 빈손으로 달아나 조선 측으로 피난했다. 이 소요 사건으로 그의 부친 김천봉(金天奉, 78세)은 현장에서 참살당했다.</p> <p>당시 여러 거류민과 함께 피해 구제금으로서 325엔 외에 회장으로서는 그간의 공적이 적지 않음과 부친 참살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특별히 500엔을 전달한 자이다. 그리고 그 지역 보민회 지부의 폐지 후에는 당 지역으로 돌아와 현재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상당한 공적 위로금의 지급을 특별히 희망하는 바이다.</p>
--	---

을호

보민회(안동 영사관 관내) 공로자 조사

성명	직함	공적의 개요
주림 (朱林)	장백지부 회장	1918년 조선인회 지부 설치 당시부터 이주 조선인을 위해 진력했다. 1922년 5월 보민회 장백 지부 회장으로 추천되자 각 임원을 지휘하여 민심이 악화될 때는 전력을 다해 사상 계선에 노력했다. 이와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이주 조선인 호구를 조사하여 명부를 완성한 것은 위대한 공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아마 달리 비교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관헌과 인민들의 접촉을 밀접하게 하는 데 뜻을 두고 예의 회무에 진력했다.
강신향 (姜信卿)	동 서기	1922년 5월 지부 설치와 함께 서기로 취직해 회무에 힘쓴 공적이 적지 않다.
정인채 (鄭寅采)	동 조사원	종래부터 지방 유력자로서 신망이 두텁다. 보민회 지부 부회장에 추천되어 회장을 보좌했다. 또한 일본어에 능통하고 우리 관헌의 의사를 일반 이주민들에게 철저하게 보급해 지도 유도한 공적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현재 조사원에 임명된 것은 보민회 경비 감소의 결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진 (李晉)	동 조사원	정 학교(正學校, 조선인 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된 것) 교원으로서는 아동교육에 힘썼고, 지부 조사원으로서는 각 임원들과 협력해 그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조병철 (趙炳喆)	동 13도구 지회장	모두 지회장으로 추천된 이래 회무에 계속 진력한 공적이 적지 않다.
정창규 (鄭昌奎)	동 14도구 지회장	

김도일 (金道一) 강흥구 (姜泰球)	동 17도구 지회장 동 20도구 지회장	
손희상 (孫熙相)	임강지부 회장	갑호에 기재한 바와 같음.
정단 (鄭丹)	동 서기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
김영한 (金英漢)	동 조사원	불령선인 상황 조사의 용무를 맡아 그 근거지 방면 순찰에 종사해 왔지만 갑자기 중국관헌으로부터 불령자로 의심되어 체포·수감되었다. 단, 몸을 희생하여 보민회의 임무를 다한 공적은 인정할 수 있다.
승덕봉 (承德鳳) 주명준 (朱明俊) 김일수 (金逸秀) 이광민 (李光珉) 안건식 (安建植)	동 조사원 영동 지회장 영서 지회장 15도구 지회장 68도구 지회장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
이완구 (李完求)	집안지부 회장	갑호에 기재한 바와 같음.
김용국 (金用國)	관전지부 회장	갑호에 기재한 바와 같음.

〈출전 : 保民會功勞者及關係者功績調二關スル件, 1924년 3월 12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20-3]

기밀(機密) 제22호

1924년 3월 13일

안동영사 니시자와 기조(西澤義徵)

외무대신 남작 마쓰이 게이시로(松井慶四郎) 진(殿)

1924년 3월 13일자 기봉령(機奉領) 제15호 봉천 총영사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을 송부함.

건명 : 보민회 관계자 공적조서에 관한 건

1924년 3월 13일

안동 총영사 니시자와 기조(西澤義徵)

봉천 총영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 진(殿)

### 보민회 관계 공적조서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이달 11일자 기밀봉령 제12호로 보고한바 또한 집안 지부에 관해서는 별지 조서에서 보는 바와 같으니, 검토하시길 바라며 답신을 올리겠습니다.

본 서신 복사 송부처 : 외무대신, 철령 영사, 통화·해룡 분관 주임

### 집안 보민회 지부 임원 공적조서

성명	직함	공적의 개요
이완구 (李完求)	지부 회장	별도 보고 완료.
전명조 (全明朝)	서기	특별한 공적을 인정할 수 없음.
조윤걸 (趙允傑)	조사원	통화 보민회 지부 조사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그 후 1922년 1월부터 현직에 임명되어 종종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 상황 조사에 종사한 동시에 강 건너편과의 통신 연락을 하고 있다.
윤수복 (尹壽福)	조사원	1923년 1월 조사원으로 임명된 이래 오로지 조사업무에 종사한 동시에 위험지역의 상황 조사를 위해 맡은바 임무를 다했다. 또한 강 건너편과의 통신에 종사했다.